

CONTENTS

권두칼럼

임진·병자 환란의 징비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전홍택 02

현안분석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현황과 개선방안 · 허경선 08

공공요금 규제제도 개선을 통한 요금사업기관의 부채관리방안
· 하세정 28

공공정책포럼

정부3.0시대의 공공기관의 역할 4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이탈리아의 조세 관련 법령 공포 외 54

정책흐름

2015년 2월 고용동향 75

2014년 국민연금, 375만명에게 13조 8천억원 지급 83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실시 87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90

한-UAE 관세청, 세관협정 체결로 對UAE 수출기업지원 강화 94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지원 사업 본격 실시 96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 박차 97

이슈&포커스

동반성장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 포럼 외 101

임진 · 병자 환란의 징비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요즘 KBS 역사드라마 ‘징비록’이 화제가 되면서 서점에서도 『징비록』 판매가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에 비추어 볼 때 다시 한 번 임진왜란과 더불어 병자호란에 대해서 징비(지난 일에 대한 자기반성과 미래 환란에 대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자호란은 사전에 여러 징후가 있었고,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한 새 정권은 전쟁에 대비할 기간이 10여 년이나 있었음에도 국정개혁을 통해 국력을 확충하여 정변을 양성할 골든타임을 허송세월로 보냄으로써 청나라 군대가 1636년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51일 만인 1637년 1월 30일 삼전도에서 인조가 홍타이지(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치욕을 겪게 된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일본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체할 새로운 ‘슈퍼 파워’로 굴기(崛起)하는 국제질서의 급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이 명나라 정복을 내세우며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의 서막이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의 시작,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고 조총으로 무장한 15만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불과 1년 전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명나라로 쳐 들어가겠으니 조선도 참여하라’는 일본의 답서를 받아 가지고 왔으면서도, 일본의 국력과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보고를 하여 조정에서는 논쟁만 벌이고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17세기 초 후금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멀지 않아 명을 패망시키고 대륙의 ‘슈퍼 파워’로 등장할 때에도 국제정세에 대한 조선의 무지는 계속 되었다.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여 후금이 만주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쇠퇴기에 들어선 명나라는 계속 수세에 몰리게 되고 조선은 후금

과 명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된다. 후금은 조선에 대해 자신을 형의 나라로 사대(事大)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한 ‘은혜’를 내세워 조선이 후금 배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명의 쇠퇴와 후금의 부상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여 중립을 지킬 것인가, 왜란 당시 명의 은혜에 보은하기 위해 친명하여 후금을 적대시할 것인가를 놓고 조선의 국론이 분열되는 가운데 1623년 친명세력에 의해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그리고 조선이 후금의 요구를 거절하자 1627년 후금은 정묘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였다. 후금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던 조선은 할 수 없이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고 외교를 강화하게 된다. 국력을 더욱 확장한 홍타이지(청태종)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청을 명과 대등하게 대접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조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1636년 청은 명나라 공격에 앞서 배후를 정복하여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을 다시 침략하였다.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그러나 조선은 이러한 국제정세에 무지한 채 오직 명나라에 대한 ‘의리’에 집착하다가 왕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설령 국제정세에 밝다고 하여도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만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혁정책을 통해 경제적 · 군사적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했음은 물론이다.

무위에 그친 재정책과 정병 양성

임진왜란 당시 군사력의 열세를 뼈저리게 경험한 류성룡은 징비록(초본 외근포집, 진사록, 군문등록을 포함한 간행본 16권)에서 군기능과 군제를 개혁하여 1만명의 정병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무위에 그쳤다. 한편, 인조반정 직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개혁을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백성들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쌀로 납부하고 군역 등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며 왕실과 조정 그리고 지방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물자(공물)를 현물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중 백성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공물이었다. 토지세는 납부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공물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동법이란 공물을 현물이 아닌 쌀로 바꾸어 내되 납부 횟수와 양을 제한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는 획기적인 개혁안이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양전(토지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 등 대동법 실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경기도와 강원도 이외 지역으로 대동법의 확대 실시는 무산되었다.

이후 재정책과 병력 확보를 위한 개혁정책을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가에

.....
임진왜란
당시 군사력의
열세를 뼈저리게 경험한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군기능과 군제를
개혁하여 1만명의
정병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무위에 그쳤다.

.....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구조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해 다시 논쟁이 일어난다. 호패법(자신의 본래 신분을 속이거나 각지를 떠돌며 身役을 회피하는 자를 색출하여 질서를 바로 잡고 역을 부과하기 위함), 군적정리(군인으로 징발할 대상자의 신상이 기록된 병적 잘못 바로잡기), 양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 끝에 호패법을 먼저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호패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정묘호란(1627년)이 일어나면서 호패법도 별다른 성과 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정묘호란 후에도 병자호란(1636년)이 일어날 때까지 재정을 확충하여 정병을 양성하기 위한 국정개혁은 논의만 무성한 채 추진되지 못하였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4대 구조개혁’ 등 국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 등 정책추진이 여의치 않은 모습을 보면서 임진년과 병자년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틀을 모방과 추격에서 창의와 선도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발전전략’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분야가 선정되었다. 또한 규제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과 관광·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창조경제의 실현, 4대 개혁, 규제개혁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은 이전 정부에서 과거 10여 년간 계속 추진되었던 핵심 과제와 유사하다.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국론 통일의 중요성

노무현 정부에서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 양극화 추세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인재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혁신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확립되는 동반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등 금융시스템 선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학교육 및 직업능력 혁신, 덩어리 규제개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발전 전략의 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성장여력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그리고 경제 부문·계층·대중소기업·지역 간 불균형 확대라는 데에 이전 정부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더불어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신노사문화 창조 및 금융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구조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지식기반경제, 혁신 주도 경제와 궤를 같이하는 개념이며 창조경제 창달을 위한 금융, 교육,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개혁, 규제개혁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구조개혁은 사실상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가 추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G-2의 하나로 부상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8년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14%가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감안할 때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2015년부터 3년은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국론이 통일되어 구조개혁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2015년부터
 3년은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현황과 개선방안**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요금 규제제도 개선을 통한 요금사업기관의 부채관리방안**
하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현황과 개선방안

I. 서론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kheo@kipf.re.kr)

배당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상장기관의 배당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05년부터 '11년까지 세계 19개국의 배당성향을 비교한 결과, 한국 상장기업의 배당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강소현(2014)), 국제비교를 실시한 다양한 분석 자료는 분석에 포함된 대상국가나 기업의 범위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달라지지만, 여러 자료에서 한국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김상호(2014), 이재만(2014), 이한득(2012)).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수준을 높여 가계소득을 높이고 경기부양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기업배당 활성화 추진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배당을 촉진하는 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의 도입¹⁾과 공기업의 중장기 배당확대 정책, 연금의 의결권 강화 및 배당확대 지침 도입 추진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정부출자기관의 중장기 배당확대 정책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14년 21.5%에서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정부배당의 기존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1.5%였던 기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두 배 가까이 높이는 것으로, 정부출자기관 배당의 대폭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배당의 확대뿐

¹⁾ 기업소득환류세제 수정안과 배당소득증대세제 수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 통과됨.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와 임금 증가를 늘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것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세율 10%로 과세함.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여 세부담 경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을 포함하고 있음

만 아니라 정부의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의 행사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공기업 배당의 대폭적인 확대는 정부의 배당수입 확대라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배당확대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배당확대 추진 정책의 영향으로 유가증권상장기관의 배당은 이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5년 2월 27일 현재 유가증권상장기관에 속하는 355개 기업이 지난해 기말 현금 배당을 공시하였고, 2년 연속 배당을 공시한 319개 기업 중에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50개 기업(47%)이 전년 대비 배당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²⁾

본 원고에서는 정부의 배당확대정책 중에서 특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정책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가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대상과 범위, 정부배당에 대한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출자기업의 배당과 관련한 이슈 중 배당수준과 이익금 처리 현황에 대해 분석한 후, 이를 통하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제도와 현황

1. 정부배당 관련 법과 제도

국가는 공공기관에 출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주주가 되며,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통해 투자수익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러한 배당수입은 중요한 국

“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되는
 정부출자기관은 2014년 기준 총 37개이며
 이 중 일반회계 소관이 29개,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이 8개이다.**
 ”

가 세입 원천의 하나이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 2에서 제65조의 6까지에 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배당결정의 원칙, 배당수입 예산안 계상, 배당의 결정, 국회 보고 등의 절차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익금 처리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서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정부출자기관이 기관의 설립법이나 근거법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³⁾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되는 정부출자기관⁴⁾은 2014년 기준 총 37개이며 이 중 일반회계 소관이 29개,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이 8개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32개(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5개, 기타공공기관 6개)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공기관이 5개이다.

2)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14년도 12월 결산법인의 현금배당 공시현황(15.2.27일 현재)」, 2015.3.4.

3) 일반회계 소관 전체 29개 출자기업 중에서 24개 기관이 설립 근거법에, 5개 기관은 기관의 정관에 이익금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상법에 따라 이익금 처리를 하는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88관광개발, 대한송유관공사가 포함됨

4)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이며 이 중에서도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표 1〉 정부배당대상기업(2014년 기준)

분류	유형	일반회계(29)	기금, 특별회계(8)
공공기관(32)	시장형 공기업(7)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1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6)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¹⁾ , 산은금융지주	88관광개발(주), 한국투자공사
비공공기관(5)	한국방송공사, 서울신문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주: 1)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과의 통합으로 2015년부터는 정부배당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 「국유재산법」

정부가 보유한 지분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29개의 정부출자기관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결정과 관련하여 배당결정방식에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통일된 기준이 도입되었다.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정부출자기업체의 정부배당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훈령에 규정된 배당결정 원칙, 절차 등 주요 내용이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2011년부터 규정되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5조의 3에서는 정부배당 결정의 원칙⁵⁾을 명시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의 산정과 이익금 처리

는 「상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반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가능이익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에 따라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가능이익은 각 개별법과 규정 등에 명시된 이익금 처리 방법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이익금 처리 방식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개별법과 정관에 따라 법정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기준, 적립 한도, 이익금 처리 순서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5)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의 규모,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동종·유사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를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정부출자기관 지분 현황(2014. 9)

(단위: 억원, %)

주무부처	기관명	수권 자본금	납입 자본금	정부출자	
				금액	지분율
			(A)	(B)	(B/A)
기획재정부	1 한국조폐공사	150	66	66	100.0
문화체육관광부	2 한국관광공사	500	324	179	55.2
산업통상자원부	3 대한석탄공사	4,500	2,650	2,650	100.0
	4 한국광물자원공사	20,000	16,303	16,276	99.8
	5 한국전력공사	60,000	32,098	6,796	21.2
	6 한국가스공사	10,000	4,616	1,207	26.2
	7 한국지역난방공사	2,000	579	200	34.5
	8 한국석유공사	130,000	100,699	100,699	100.0
국토교통부	9 한국수자원공사	100,000	70,048	63,964	91.3
	10 한국도로공사	300,000	276,882	232,448	84.0
	11 한국감정원	120	60	30	49.4
	12 인천국제공항공사	80,000	36,179	36,179	100.0
	13 대한주택보증	33,900	32,320	17,791	55.0
	14 한국공항공사	100,000	23,578	23,578	100.0
	15 한국철도공사	220,000	95,880	95,880	100.0
16 한국토지주택공사	300,000	247,432	214,464	86.7	
해양수산부	17 부산항만공사	80,000	32,976	32,976	100.0
	18 인천항만공사	50,000	20,677	20,677	100.0
	19 울산항만공사	80,000	4,405	4,405	100.0
	20 여수광양항만공사	60,000	15,523	15,523	100.0
방송통신위원회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3,000	100.0
공기업(21)		1,634,170	1,016,295	888,987	87.5
농림축산식품부	22 한국농어촌공사	50,000	13,368	13,368	100.0
	23 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	1,304	1,304	100.0
산업통상자원부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00	500	500	100.0
금융위원회	25 한국자산관리공사	10,000	8,600	4,888	56.8
	26 한국주택금융공사	20,000	14,316	9,866	68.9
준정부기관(5)		83,500	38,088	29,926	78.6
기획재정부	27 한국수출입은행	150,000	77,481	54,295	70.1
	28 한국투자공사	10,000	1,000	1,000	100.0
금융위원회	29 한국정책금융공사	150,000	150,000	150,000	100.0
	30 산은금융지주	50,000	18,170	1,804	9.9
	31 중소기업은행	100,000	32,524	17,424	53.6
국가보훈처	32 88관광개발주	20	20	20	100.0
기타공공기관(6)		460,020	279,195	224,543	80.4
산업통상자원부	33 대한송유관공사	2,700	2,250	220	9.8
문화체육관광부	34 서울신문사	2,177	416	127	30.5
국토해양부	35 공항철도주식회사	10,000	2,700	267	9.9
방송통신위원회	36 한국방송공사	3,000	2,062	2,062	100.0
	37 한국교육방송공사	1,000	542	542	100.0
공공기관외(5)		18,877	7,970	3,218	40.4
합계(37)		2,196,567	1,341,548	1,146,674	85.5

자료: 기획재정부

〈표 3〉 정부출자기관(일반회계소관)의 이익금 처리 규정

구분	기관명	이익금 처리 규정명칭	이익금 처리순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공기업 (시장형) ⁽⁶⁾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정관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10% 이상)	배당	사업확장적립금	임의적립금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사업확장적립금 ¹⁾ (20% 이상)	국고 또는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	
	인천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배당	사업확장적립금	
	부산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배당	사업확장적립금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10% 이상)	사고보상적립금 ¹⁾ (10% 이상)	배당	사업확장적립금 등 임의적립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배당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사업확장적립금 (20% 이상) ¹⁾	배당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배당	사업확장적립금	
	울산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배당	사업확장적립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사업확장적립금 (20% 이상) ¹⁾	토지은행적립금 (40% 이상) ¹⁾	배당
공기업 (준시장형) (11)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정관	이익준비금 (1/2, 10% 이상) ²⁾	순해배상적립금	배당	배당평균적립금	상임이사 상여금 등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법	이익준비금 (1/2, 10% 이상)	배당	이익준비금 외 준비금	이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사업확장적립금 (20% 이상) ¹⁾	배당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10% 이상)	배당	특정목적 적립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사업확장적립금 (20% 이상) ¹⁾	배당	

〈표 3〉의 계속

구분	기관명	이익금 처리 규정명칭	이익금 처리순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공기업 (준시장형) (11)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배당	사업확장적립금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10% 이상)	배당	타 적립금 적립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총액, 20% 이상)	기타 적립금	국고납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1/2, 20% 이상)	사업확장 적립금 (20% 이상) ¹⁾	국고납입	
준정부기관 (5)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총액, 20% 이상)	기타 적립금	국고납입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총액, 20% 이상)	사업확장적립금	배당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이익준비금 (총액, 20% 이상)	배당	잔여이익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총액, 20% 이상)	기타적립금	국고납입	
기타 공공기관 (4)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적립(총액, 25%)	이사회 의결로 처리			
	신은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법	이익준비금 (총액, 10% 이상)				
		산은금융지주정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배당금	임의적립금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이익준비금 (총액, 10% 이상)	배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주: 1. 괄호의 앞의 숫자는 이익준비금 적립시 자본금의 한도를, 뒤의 숫자는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중을 나타냄

1) 이익금을 기준으로 적립하며, 자본금 총액을 한도로 함

2) 매월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위의 표에 설명되어 있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관련 제도를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배당결정에 있어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배당을 결정하지만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하게 된다. 이익금 처리에 있어서 민간은 상법에 따라 이익금을 처리하지만 정부출자기관은 개별 설립법, 근거법, 정관에 따라 이익금 처리에 따르고 일부 정부출자기관만 상법에 따르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 있어 상법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출자기관은 당기순이익에서 결손액과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의 적립기준에 있어서 민간기업은 현금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적립한도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하고 있으나 정부출자기관은 당기순이익의 10~25%를 적립하고 자본금의 50~100%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그 범위도 당기순이익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다 배당 여부와 규모⁶⁾에 있어 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익준비금의 적립에 있어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적립하고 있고 적립한도도 높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이 훨씬 많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익준비금 외에도 사업확장적립금, 손해배상적립금 등 다양한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적립금의 범위가 넓고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 민간기업과 정부출자기관 배당제도 비교

	민간기업	정부출자기관 ¹⁾
배당결정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정부와 기업의 협의 후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이익금 처리 근거법	상법	개별 설립법 또는 근거법, 정관, 상법
배당가능이익	순자산-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	이익금-이월결손-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사업확장적립금)-기타
이익준비금 최소 적립 기준	이익배당금의 10% 이상	이익금의 10~25%
이익준비금 적립한도	자본금의 50%(은행은 자본금의 100%)	자본금의 50~100%

주: 1) 상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경우 상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적립한도가 적용되며 개별법과 정관에 따르는 경우 각 기관의 배당가능이익,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적립한도는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됨

6)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과거의 이익 유보를 고려하지 않고 배당가능 금액을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에 비해 배당가능이익의 기준이 적음(김윤경(2015))

2. 정부배당 현황

정부출자기관은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매년 배당을 실시하며 정부가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정부에 배당

을 지급한다. '14년 일반회계 소관 29개 출자기업 중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17개 기관에서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14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은 3,256억원이었다.

〈표 5〉 일반회계 정부배당 실적('12~'14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11순익	배당률	배당성향	배당세입	'12순익	배당률	배당성향	배당세입	'13순익	배당률	배당성향	배당세입
한 국 전 력	-	-	-	-	-	-	-	-	2,383	1.80	23.53	122
기 업 은 행	15,522	11.6	24.06	2,433	11,206	8.00	23.00	1,678	8,120	6.60	25.28	1,235
토 지 주 택 공 사	8,054	0.28	7.75	373	12,338	0.53	9.95	715	7,160	0.32	10.79	437
수 자 원 공 사	2,938	0.77	17.60	470	3,081	0.79	17.54	492	3,411	0.94	19.04	592
가 스 공 사	2,084	14.28	26.48	158	5,057	32.8	23.55	340	-	-	-	-
수 출 입 은 행	1,468	0.54	22.90	212	1,489	0.48	17.54	232	-	-	-	-
조 폐 공 사	-	-	-	-	-	-	-	-	34	15.30	30.00	10
농 어 촌 공 사	923	0.98	13.90	128	666	0.74	14.58	97	-	-	-	-
KOTRA	399	21.43	17.20	69	163	5.69	17.48	28	-	-	-	-
감 정 원	-	-	-	-	14	4.66	20.32	2	1,734	652.40	22.57	193
KAMCO	1,060	5.85	25.70	416	953	2.99	26.98	146	510	1.75	29.50	85
도 로 공 사	1,035	0.08	17.60	6	842	0.06	18.28	2	800	0.06	21.55	2
유 통 공 사	112	1.80	13.90	16	124	1.41	14.82	18	116	1.58	17.82	21
관 광 공 사	-	-	-	-	861	58.94	22.16	105	33	2.38	23.70	4
석 유 공 사	-	-	-	-	465	0.10	22.34	0.2	1,622	0.43	26.56	1
한 국 공 향	1,192	1.47	25.90	168	1,382	1.86	28.18	212	1,286	1.59	29.20	194
부 산 향 만	693	0.74	25.10	244	578	0.46	26.26	152	717	0.64	29.26	210
광 물 자 원 공 사	119	0.23	19.80	3	-	-	-	-	234	0.33	21.08	5
주 택 금 융 공 사	1,364	1.65	13.00	109	2,234	3.15	17.08	208	-	-	-	-
인 천 향 만	128	0.15	22.50	22	131	0.14	22.74	21	133	0.16	25.02	23
울 산 향 만	240	1.50	27.50	66	146	0.98	29.50	43	184	1.25	30.00	55
정 책 금 융 공 사	5,540	0.81	22.00	1,107	-	-	-	-	-	-	-	-
EBS	-	-	-	-	-	-	-	-	-	-	-	-
산 은 금 융 지 주	-	-	-	-	3,737	18.03	87.55	319	2,282	3.77	30.00	67
철 도 공 사	-	-	-	-	-	-	-	-	-	-	-	-
물 납 주 식	-	-	-	-	-	-	-	120	-	-	-	-
계	42,871	3.78	20.37	6,048	45,467	7.46	24.19	4,930	30,759	1.06	21.54	3,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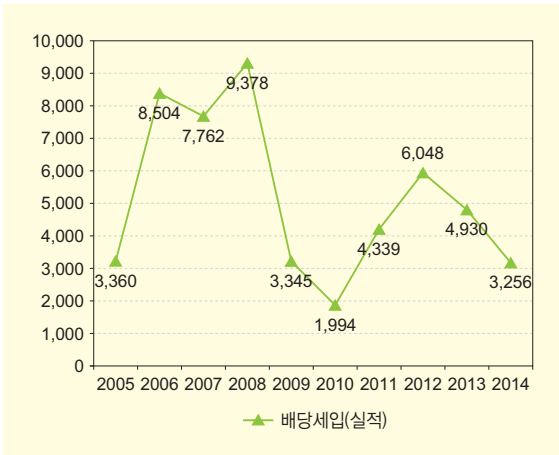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05년 3,360억원이었던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은
 2006년 8,504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09년에는 전년도의 35.6%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2010년에는 1,994억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은 경제 환경과 정부출자기관의 수익성에 따라 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05년 3,360억원이었던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은 '06년 8,504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09년에는 전년도의 35.6%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10년에는 1,994억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11~'12년에 거쳐 배당세입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09년 이전으로는 회복하지 못했고 '13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일반회계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실적('05~'14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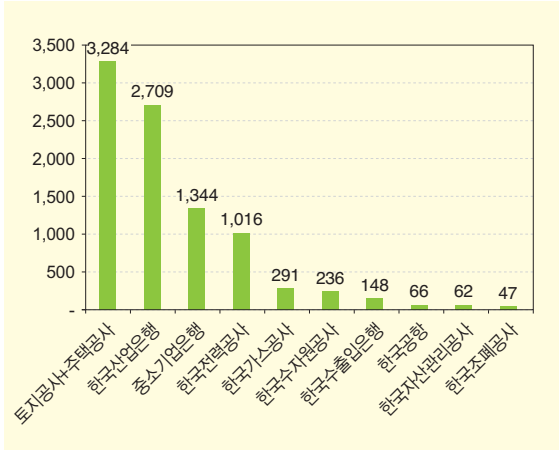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08년은 9,738억원의 배당을 지급하여, 최근 10년간 배당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후 변동을 거듭하며 '14년에는 3,256억원으로 '0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배당실적이 가장 높았던 2008년도와 가장 최근인 2014년도에 배당을 실시한 기관 중에서 배당 실적 상위 10개 기관의 배당을 비교해 보면 기관의 구성과 배당실적에 큰 차이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배당실적을 보였던 '08년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3,284억원의 배당을 지급하여 정부 배당 지급기관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한국산업은행(2,709억원), 중소기업은행(1,344억원), 한국전력공사(1,016억원)가 1천억원 이상의 배당을 정부에 지급하였다. '14년에는 중소기업은행만이 1,235억원으로 유일하게 1천억원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592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437억원), 부산항만공사(210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08년과 '14년의 배당실적 규모와 분포의 차이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수익성이 감소하였고, 대규모 에너지기업과 SOC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08년에 3,284억원으로 가장 많은 배당을 지급했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배당은 합병 후 '14년에는 437억원으로, '08년 배당수준의 13.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융위기 등으로 이전만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배당 역시 급감하였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08년 이후 5년간 적자가 발생하여 '09년부터 '13년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림 2] '08년 배당 상위 10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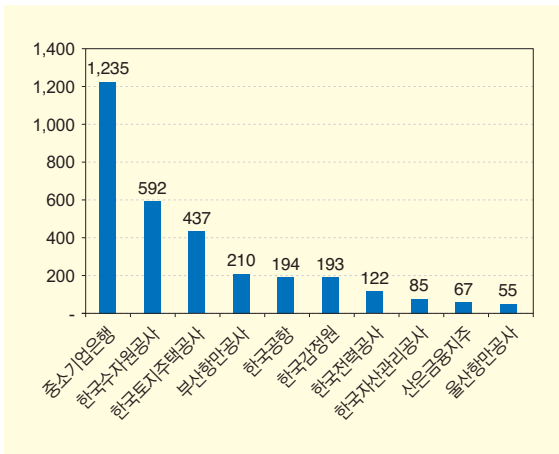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그림 3] '14년 배당상위 10개 기관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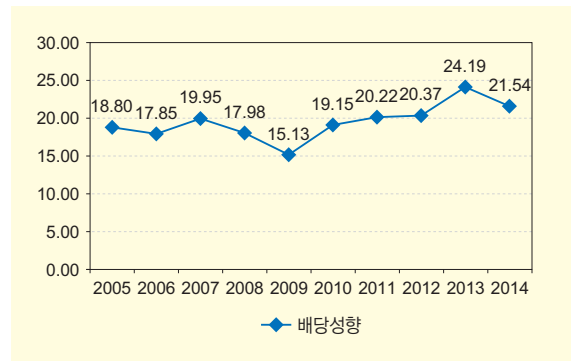
연도별 차이가 큰 배당실적과 달리 배당성향⁷⁾은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09년 이후 소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배당성향은 '09년 15.13%였으나 점

7) 배당성향=배당액/당기 순이익

차 증가하여 '13년 24.19%로 증가하였고, '14년 소폭 하락하여 21.54%였다. 배당성향은 '11년 20.22%로 처음 20%를 넘은 후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 일반회계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성향('05~'14년)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Ⅲ.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관련 이슈

1. 배당수준의 적정성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배당수준의 적정성, 이익금 처리규정의 적정성, 통합배당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을 민간의 배당수준과 비교한 연구(김지영(2012))에서는 정부배당의 수준이 민간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배당수준 역시 최근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과 정부배당대상기관의 배당성향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출자기관의 배

“
**최근 들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당 활성화
 추진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

당수준을 민간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교 대상에 대하여 최근 자료를 활용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수준은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09년 이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배당의 규모는 '12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배당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출자수입 및 수익률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출자금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출자금 대비 정부출자수입 비율은 '09년에는 0.60%였으나 '10년 0.34%로 감소하였다가 '11년에는 0.72%, '12년에는 0.99%로 상승하였으나, '13년 0.80%, '14년 0.53%로 감소하였다.

〈표 6〉 정부출자금 및 출자수익률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부출자금(조원)	55.6	59.0	60.5	61.1	61.5	61.7
정부출자수입(억원)	3,435	1,994	4,339	6,048	4,930	3,256
출자수익률(%) (정부출자수입/출자금)	0.60	0.34	0.72	0.99	0.80	0.53

주: 일반회계 기준(2014년 현재)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들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당 활성화 추진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을 확대하여 가계소득을 높이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4년 하반기부터 기업배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을 위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배당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수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출자기관 중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의 4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정부출자기관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해당하는 4개의 공공기관(한전 KPS, 한국전력기술, 강원랜드, 그랜드레저코리아)이 상장되어 있어 배당확대로 인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선도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익금 처리규정과 내부 유보의 적정성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또 다른 이슈는 이익금 처리규정 및 내부 유보의 정도와 관련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 처리는 각 기관의 개별법과 정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적립기준과 적립한도가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고 있어 민간기업보다 적립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이익금 처리규정이 이익준비금과 적립금을 민간기업보다 과도하게 적립하도록 함을 지적(김기영 외(2012), 박경진 외(2012))하였다. 또한 사업확장적립금의 법정적립금화 및 과도한 적립을 규정하는 것 역시 정부출자기관 이익금 처리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박경진 외(2012))되고 있다.

2010년부터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이익금 처리와 관련하여 27개 기관의 설립법 개정안이 발의⁸⁾되어 의무적립금을 상법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8개 법안⁹⁾만이 통과되고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19개 기관의 법률 개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이익금 처리규정은 여전히 민간보다 높은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의 연구(김윤경(2015))에서도 재차 지적되었다. 정부출자기관은 독점사업이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등으로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내부의 유보를 더 큰 규모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과도한 유보는 공기업의 적자나 과도한 부채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며, 대규모 공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김윤경(2015))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의 지나친 사내유보금이 지적되었으며,¹⁰⁾ 수자원공사의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비율(현행 당기순이익의 10분의 2)을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10분의 1)로 낮추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2014.11)되기도 하였다.

3. 배당의 결정 방식과 기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결정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통합배당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배당결정 방식은 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지영(2012)). 2010년 이후 계속 사용된 통합배당기준은 1단계 자체수입비율

“
**2010년부터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이익금 처리와 관련하여
 27개 기관의 설립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의무적립금을 상법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8개 법안만이 통과되고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19개 기관의
 법률 개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

에 따라 기본 배당성향이 결정된 후, 2단계에서는 수익성, 부채비율, 내보유보율 등 계량지표를 사용하여 기본 배당성향을 조정하고, 3단계 재정지원 여부, 대규모 투자 등 비계량지표에 의한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계량지표 적용에 있어서는 배당대상기업을 각 재무지표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에 따라 배당성향을 변동시키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각 기업의 재무지표 변동보다는 전체 배당대상기업 가운데에서의 순위 변화가 배당성향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1단계 자체수입비율에 따른 기본 배당성향이 대부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 2단계와 3단계에서 자체수입비율, 재무성과, 투자계획, 부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배당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나 산식이나 기준이 복잡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이 명확치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김지영(2011), 허경선 외(2014)).

8) 이해훈 의원 대표발의, '10.5월

9) 가스공사법, 항만공사법, 조폐공사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도로공사법, 무역투자진흥공사법, 수출입은행법, 한국투자공사

10) 「수자원공사 3조원대 사내유보금 적립은 국민기만」(뉴스1, 2014.10.14)

IV.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과 적립금 현황 분석

1.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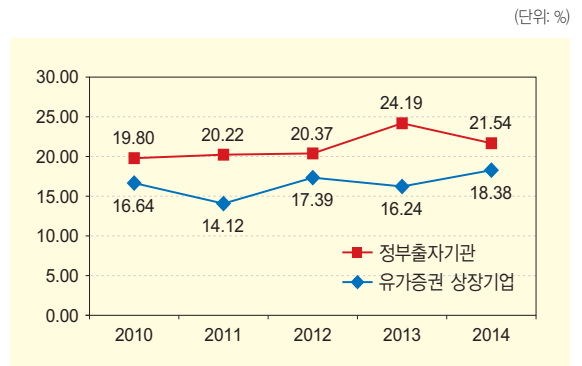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배당과 해외 공기업의 배당수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정부출자기관과 민간기업의 배당수준 비교를 위해서, 민간기업 비교 대상을 정부출자기관과 비슷한 성격을 갖도록 선정하여 합리적인 배당수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비교대상 민간기업은 KISVALUE DB에서 ①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와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외감대상기업, ② 기업 ①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으로 한정하였고 이 중에서 정부출자기관이나 공운법 대상 공공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민간기업 배당성향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가 2014년 비상장외감대상기업의 배당성향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비교하여 보면 '09년에는 배당성향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민간보다 소

폭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간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비교하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약간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배당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림 5]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10~'14년)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배당수준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해외 주요국 정부가 관리하는 출자기업 가운데

<표 7> 민간기업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10~'14년)

(단위: 개, %)

연도	민간기업								정부출자기관	
	유가증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외감		전체		기업 수	배당성향
	기업 수	배당성향	기업 수	배당성향	기업 수	배당성향	기업 수	배당성향		
2010년	409	16.64	131	14.60	381	30.39	921	20.04	18	19.80
2011년	463	14.12	176	15.67	452	30.04	1,091	17.87	21	20.22
2012년	443	17.39	193	16.35	473	35.86	1,109	22.60	17	20.37
2013년	419	16.24	207	18.27	499	36.25	1,125	21.43	19	24.19
2014년	410	18.38	207	18.58	537	53.85	1,154	27.25	17	21.54

주: 1. 배당성향(가중평균)=배당액 총계/당기순익 총계
2. 배당실현연도 기준: (회계기준+1년)

배당실현기관의 비중은 연도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0~55% 수준이었다.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47~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공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상장기업 평균 배당성향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 출자기업의 배당

수준이 동일(유사) 산업분야의 일반기업의 배당성향과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8〉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최근 3개년 배당 현황¹⁾

(단위: %)

항목		2011	2012	2013	상장사평균	
스웨덴	배당실현기관(개, %)	정부출자기업 수(a)	60	58	54	
		중 배당실현기관 수(b)	24	20	18	
		배당실현기관비중(c=b/a)	40.0	34.5	33.3	
	배당성향(%)	평균배당성향	62.9	82.9	48.0	
		배당성향 최댓값	200.0	498.0	100.0	
		배당성향 최솟값	4.2	26.0	8.4	
뉴질랜드	배당실현기관(개, %)	정부출자기업 수(a)	41	44	48	
		중 배당실현기관 수(b)	22	24	26	
		배당실현기관비중(c=b/a)	53.7	54.5	54.2	
	배당성향(%)	평균배당성향	76.5	66.0	62.7	66.2 ²⁾
		배당성향 최댓값	428.8	167.5	319.4	
		배당성향 최솟값	3.6	5.9	4.1	
프랑스	배당실현기관(개, %)	정부출자기업 수(a)	57	58	60	
		중 배당실현기관 수(b)	20	·	30	
		배당실현기관비중(c=b/a)	35.1	·	50.0	
	배당성향(%)	평균배당성향	47.7	·	45.5	51.3 ³⁾
		배당성향 최댓값	124.6	·	110.0	
		배당성향 최솟값	0.2	·	0.02	
영국	배당실현기관(개, %)	정부출자기업 수(a)	20	19	20	
		중 배당실현기관 수(b)	7	8	8	
		배당실현기관비중(c=b/a)	35.0	42.1	40.0	
	배당성향(%)	평균배당성향	68.9	48.1	50.1	48.1 ³⁾
		배당성향 최댓값	157.3	83.7	80.2	
		배당성향 최솟값	25.1	29.6	26.3	

주: 1) 배당실현연도 기준(회계연도+1년)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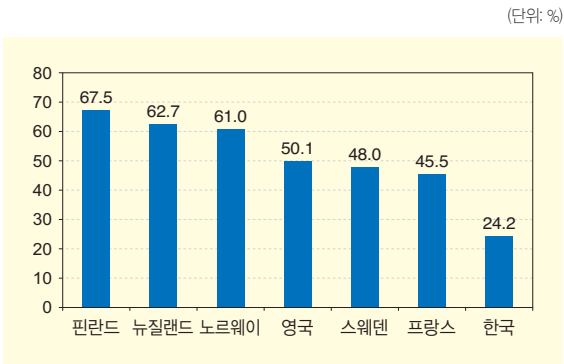
2) 2013년도 상장기업 평균배당성향

3) 2012년도 상장기업 평균배당성향

자료: 국가별, 연도별 공기업 연차보고서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배당수준을 우리나라 정부출자기관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일반회계소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013년 기준 24.2%로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공기업의 배당성향(2013년)



주: 1. 핀란드는 정부가 직접지분을 가진 상장공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임
 2. 노르웨이의 배당성향은 개별 공기업의 배당성향을 단순 평균한 값임
 3. 배당실행연도 기준(회계연도+1년)으로 표시
 자료: 국가별, 연도별 공기업 연차보고서

2. 이익금 처리와 적립금 현황

우리나라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과 내부유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상장 및 코스닥기업, 비상장외감대상 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적립금의 규모는 2009년 193.1조원에서 2013년 386.5조원으로 두 배가 증가하였지만, 이익잉여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은 2009년 40.3%에서 2013년 44.4%로 4.1%p가 증가하였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립금의 규모 및 변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의적립금 규모 및 변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출자기관의 적립금 규모는 2009년 40.1조원에서 2013년 63.7조원으로 59%가 증가하였고, 이익잉여금 대비 비중 관점에서는 2009년 92.8%에서 2013년 108.9%로 16.1%p가 증가하여 이익잉여금 증가 대비 적립금 증가가 민간보다 4배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민간기업(외감포함)과 정부출자기관의 적립금 현황

	연도	이익잉여금	적립금 합계	이익준비금	기타법정 적립금 ¹⁾	임의적립금
민간기업 (상장, 코스닥, 외감)	2009	479.2	193.1 (40.3)	7.1 (1.5)	19.0 (4.0)	167.0 (34.8)
	2010	580.7	231.5 (39.9)	8.0 (1.4)	21.1 (3.6)	202.4 (34.9)
	2011	754.0	289.0 (38.3)	10.2 (1.4)	27.0 (3.6)	251.8 (33.4)
	2012	817.5	340.7 (41.7)	11.1 (1.4)	28.7 (3.5)	300.9 (36.8)
	2013	871.1	386.5 (44.4)	11.4 (1.3)	34.0 (3.9)	341.1 (39.2)
정부출자기관 (일반회계)	2009	43.2	40.1 (92.8)	8.2 (19.0)	4.5 (10.4)	27.4 (63.4)
	2010	47.5	42.7 (89.9)	9.3 (19.6)	5.5 (11.6)	27.9 (58.7)
	2011	64.4	50.1 (77.8)	15.0 (23.3)	6.3 (9.8)	28.8 (44.7)
	2012	61.5	63.9 (103.9)	16.7 (27.2)	14.2 (23.1)	33.0 (53.7)
	2013	58.5	63.7 (108.9)	17.4 (29.7)	15.8 (27.0)	30.5 (52.1)

주: 1. 괄호는 이익잉여금 대비 비중을 나타냄
 1)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이 포함됨
 자료: KISVALUE, 정부출자기관 제출자료

정부출자기관의 적립금을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정부출자기관은 이익잉여금에서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는데 민간기업의 경우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의 44.4%를 적립금으로 적립한 데 반하여 정부출자기관은 이익잉여금보다 많은 108.9%를 법정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둘째, 정부출자기관은 적립금 중에서도 특히 이익준비금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기준 민간기업의 경우 이익준비금이 이익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인 데 비하여 정부출자기관의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29.7%, 전체 적립금의 27.3%에 달하고 있다. 셋째, 이익준비금 외에 기타 법정적립금 역시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민간보다 높은 비율로 적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이익잉여금의 27%가 기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3.9%에 불과하다.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정부출자기관은 각 개별법 등에 규정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과 한도가 매우 크고, 이익준비금 외에 사업확장적립금 등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 이익금을 처리하는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이익배당액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기준 및 적립 한도 역시 상법보다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법 및 정관에서 이익금의 적립비율은 이익금을 기준으로 최소 적립비율만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기이월이익 미처분잉여금까지 적립의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적립비율을 상회하여 더 많은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정부출자기관을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정부출자기관은 이익잉여금에서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이익준비금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공기업이 이익금을 민간보다 과도하게 적립하는 이유는 공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되므로 이러한 이익금 처리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금 처리규정은 대부분 기관 설립 초기에 설정되어 변경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어 왔다. 설립 초기엔 기관의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이익금 처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경우, 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업이니만큼 「상법」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이미 상법을 적용하고 있어 기관 간 형평성의 이슈도 제기될 수 있다.

V. 정부출자기관 배당안과 향후 개선방향

1. 정부출자기관 배당정책(14.12)

정부는 2014년 12월에 향후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¹¹⁾ 이 정책방향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정부배당을 위해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한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결정방식을 개선할 것을 포함하

11) 기획재정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 보도자료, 2014.12.19.

“
**정부는 2014년 12월에
 향후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적절한 수준의 정부배당을 위해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고 있다. 배당목표는 배당성향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2014년 21.5%였던 배당성향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5년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2020년 40.0%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년 3%p씩 확대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배당성향이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40%가 되도록 하고 있다.

〈표 10〉 정부출자기관 연도별 배당성향 목표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5	25.0	28.0	31.0	34.0	37.0	40.0

자료: 기획재정부

배당수준 확대와 더불어 정부의 배당정책에 포함될 또 다른 개선안은 정부배당 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10년부터 적용된 통합배당 기준을 적용하여 배당이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통합배당기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배당 개선안에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배당목표, 개별출자기관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계량 및 비계량 지표의 중복 해소 및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배당성향 결정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부출자기관 배당정책 발표는 그간 지적되어 왔던 정부출자기관 배당의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중기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부배당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수준 확대와 배당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배당수준을 2020년까지 40%까지 확대함으로써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배당추세를 따라잡고, 더불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배당확대에 대한 간접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개선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은 정부 세외수입의 중요한 부분이며, 정부출자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배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당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주주에게는 투자수익의 한 부분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잉여현금을 투자와 배당으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2014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배당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수준과 배당결정기준의 정기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중기 배당목표를 공표하였지만 실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이 이루어지는 수준을 정기적으로 동종 산업에 속하는 민간기업, 해외 공기업 등과 비교하여 배당수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배당이 정부출자기관의 산업 및 업무특성과 재무성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경기변동과 외부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 처리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설립법과 정관에 따라 이익금 처리를 하는 정부출자기관의 규정은 상법과 비교하여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민간기업보다 이익잉여금에서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 적립금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독점이나 과점 등의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투자나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러한 적립금을 민간기업보다 아주 높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적립금을 「상법」 이상으로 높게 적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을 「상법」에 준하여 처리¹²⁾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익준비금 적립의 기준을 이익금의 20% 이상이 아닌 상법상의 기준인 이익배당(현금배당)액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출자기관 대부분의 이익금 처리 규정은 현재 각 기관의 개별법과 정관에 제각각 명시되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개정이 필요할 경우 수많은 법의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 처리에 대해 공통적용이 필요한 경우 상위법에 명시하고 기관 특성이 필요한 일부분(임의적립금 등)

“
**정부배당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대형 SOC,
 에너지기업의 수익성 악화다.**
 ”

에 대해서는 개별법 등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정부출자기관의 수익성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규모는 '08년 9,738억 원에서 '14년에는 3,256억 원으로 '0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배당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대형 SOC, 에너지기업의 수익성 악화다. '08년에 1,016억원의 정부배당을 지급했던 한국전력 공사는 '08년 이후 5년간 적자가 발생하여 '09년부터 '13년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08년 정부출자기관 중 가장 많은 정부배당(3,284억원)을 지급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주택공사는 '14년 437억원의 배당만을 지급했다. 정부배당에서 대규모 금융기관과 SOC, 에너지 기업의 배당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주요 정부출자기관의 재무성과가 정부배당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주주로서 정부의 역할은 정부출자기관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본연의 공적인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자생적으로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공기업 관리정책을 살펴보면 공기업 관리의 최고 목

12) 상법에서는 이익배당(현물배당 포함)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출자기관의 설립근거 법률상 이익준비금 적립의 기준이 배당액이 아닌 이익금(당기순이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과도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음
 13) 이익준비금 적립 최소기준을 현재 이익금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 상법에서는 이익배당(현물배당 포함)액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정부출자기관의 대부분은 이익금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의 경쟁 중립성과 수익성 의무, 자원조달, 배당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기업의 재무성과와 수익성 관리가 그간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았으나, 최근 공기업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공기업 정상화 대책 등에서는 이러한 공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부출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자회사 중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8개의 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한국전력기술, 강원랜드, 그랜드레저코리아)이 있어, 정부 외에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에게 지분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을 배당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상장된 공기업의 기본 의무이다.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수준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배당정책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배당성향을 점차 높여 가는 것으로도 제고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출자기관의 수익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선민·황인태,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성 자산,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자료, 2011.12.

강소현, 「기업의 배당정책과 투자」, 『한국 기업의 현금흐름과 배당정책 세미나 자료집』, 한국증권학회·자본시장연구원, 2014.6.

_____, 『국내 상장기업 배당정책: 평가와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3.12.

기획재정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 보도자료, 2014.12.19.

김기영·박경진·유영태, 「공기업 배당 현황과 평가」, 『규제연구』, 제19권, 제1호, 2010.

김상호, 「잠재적 배당주」, 『KDB Daewoo Daily』, KDB 대우증권, 2014.4.

김성민, 「한국기업의 배당정책」, 『한국 기업의 현금흐름과 배당정책 세미나 자료집』, 한국증권학회·자본시장연구원, 2014.6.

김윤경, 『유보금과 배당: 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 KERI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15.1.

김지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비교 분석」,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7.

_____, 「정부배당정책 적정성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12.

박경진·김기영·윤상규, 「정부출자기관의 설립근거 법상 이익금 처리규정 개선방안」, 『재무와 회계정보 저널』, 제12권, 제1호, pp. 1~28, 2012.

배성진·손위창, 「KOSPI 밸류 상승의 길」, 『현대able Daily』, 현대증권, 2014.3.

이재만, 「화수분전략」, Global Asset Strategy: Investment Idea, 하나금융그룹, 2014.4.3.

이한득, 「국내 기업 배당지급 여력 낮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2.5.

_____, 「배당성향의 국제비교와 글로벌 우량기업의 특징」, 『IR Focus』, 한국 IR 협의회, 2012.8.

허경선·박한준·김지영, 『정부출자기업 배당 정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1

OECD, *Financing State-Owned Enterprises—An Overview of National Practices*, OECD Publishing, 2014.

_____, *Competitive Neutrality—A Compendium of*

OECD Recommendations,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OECD Publishing, 2012.

_____,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OECD Publishing, 2005.

공공요금 규제제도 개선을 통한 요금사업기관의 부채관리방안¹⁾



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jha@kipf.re.kr)

I. 서론

지난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각시키고, 속도감 있는 개혁안 마련과 초기의 집중적인 실행을 통해 개혁의 방향성과 모멘텀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도 사안의 정책적 중요성을 받아들여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부채의 규모, 원인 및 배경, 해결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들을 통해 부채의 원인이 식별되었고, 이에 대한 확인과 동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크게 정부정책사업의 수행, 공공요금 통제, 경영 비효율성이 공공기관 부채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²⁾ 지금까지는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했던 만큼 선행 연구들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요인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들의 기여도에 대해서 동시에 분석해 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개별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는 추가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남겨져야 했다. 지금부터는 각 요인이 부채발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 중 요금통제에 의한 부채발생 사례에 집중하고자 한다. 요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수가 많지 않아, 분석의 결과가 소수의 기관에만 연관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요금사업기관들의 부채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중 요금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가 상당하다는 점, 일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채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이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감축과 관리에 주는 효과

1) 본고는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과제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중 요금사업기관의 부채발생에 대해 논의한 부분을 발췌하여 발전시킨 결과물임을 밝힌다.

2) 공공기관의 부채와 관련된 연구는 2012년부터 활성화되었으며, 감사원(2013), 권순조(2014), 김찬수(2012), 허경선 외(2013) 등의 연구에서 정부정책사업 수행, 경영비효율, 요금규제 등이 공통적으로 부채유발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요금과 관련된 전기, 가스, 상수도, 교통 등의 서비스가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여,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이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이고, 기관의 재무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공급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요금통제에 의한 부채증가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볼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요금통제에 의해 발생한 부채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요금사업기관만을 따로 떼어 부채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요금통제 발생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대응방안에 있어서도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부터는 요금통제가 어떤 배경과 이유에 의해 발생하는지, 어떤 대응책이 제시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요금통제에 대한 논의는 현행 체계인 총괄원가제도의 개선부터 전환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는데, 지면의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총괄원가방식의 유지라는 가장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여 개선책 제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요금사업기관의 재무현황과 부채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기관의 부채와 요금통제와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이후 요금통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을 현행 요금산정 제도와 절차의 문제점과 결부지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
**본고에서는 우선 요금사업기관의
 재무현황과 부채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기관의 부채와 요금통제와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

II. 요금사업기관의 재무현황

1. 요금사업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은 총 22개로 이 중 절반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이다(〈표 1〉 참조). 중앙공공요금 사업인 전기, 도시가스, 철도, 도로, 상수도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5대 공공서비스로 꼽히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원가에 대해 근래에 정부가 검증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들 공공서비스 사업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표 1〉 요금사업의 종류

유형	요금종류
중앙공공요금 (11종)	전기료,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요금, 도로통행료, 상수도료(광역, 댐용수), 국제항공요금(인가노선),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지방공공요금 (11종)	지하철요금, 상수도료(소매), 하수도료, 쓰레기봉투요금, 도시가스(소매),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고등학교납입금(국립: 교과부령, 공·사립: 조례)

공공요금사업기관 중 한전과 가스공사는 자체수입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시장형 공기업, 철도, 도로, 수자원공사는 50% 이상 80% 미만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산업화 초

“
**요금사업기관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 공기업에 부채가
 집중되어 있는데,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부채규모
 1, 2위를 차지하여 요금사업기관
 전체 부채의 70%를
 가지고 있다.**
 ”

기 단계인 1960년대에 에너지,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적 수요가 높으나 민간기업의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공공부문이 건설과 서비스 제공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출발과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가 국민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보편재라는 특성 때문에 설립 후 수십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독점적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1989년, 1999년에 상장되었음에도 독점공급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조직, 임원인사, 예산, 사업, 정책결정 측면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의 권리침해 논란이 있음에도 요금결정과정에서 있어서도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2. 요금사업기관의 재무현황 및 위험성

〈표 2〉에서와 같이 요금사업기관들의 부채는 2013년 196.4조원을 기록하여, 2008년과 비교할 때, 두 배로 증가하였다. 요금사업기관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 공기업에 부채가 집중되어 있는데,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부채규모 1, 2위를 차지하여 요금사업기관 전체 부채의 70%를 가지고 있다. SOC 분야의 요

금사업기관 중 전통적으로 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장 큰 편이었으나, 다른 기관에 비해 증가세가 높지는 않았다.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에는 다른 기관의 부채 크기에 현격히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표 2〉 요금사업기관의 부채 규모

(단위: 조원)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전력공사	46.9	51.8	72.2	82.7	95.1	104.1
한국가스공사	17.9	17.8	22.3	28.0	32.3	34.7
한국철도공사	6.8	8.8	12.6	13.5	14.3	17.6
한국도로공사	20.2	21.8	23.7	24.6	25.3	26.0
한국수자원공사	2.0	3.0	8.1	12.6	13.8	14.0
계	93.8	103.2	139.0	161.3	180.8	196.4

주: 2011년부터 K-GAAP에서 K-IFRS로 회계기준 변경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공기관 부채문제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는 자기자본에 비해 타인자본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재원의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체신용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부채비율을 200%로 간주하고,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책인 정상화 대책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최근의 감축실적을 바탕으로 2018년까지 172%까지 하향 조정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정부의 목표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요금사업기관 전체적으로는 이미 정부의 2017년 목표에 근접하였으나, 기관 간의 편차가 커서 개별 기관별로는 가스공사, 철도공사, 한전이 정부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앞의 두 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철도공사의 부채비율 증가 추세도 매우 기랄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수자원공사의 최근 부채비율은 우려할 만한 수

준은 아니나, 단기간에 급격한 증가를 보여 예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쉽게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요금사업기관 중에서는 도로공사만이 부채비율이 낮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요금사업기관 부채비율

(단위: %)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전력공사	113.7	125.1	126.1	153.6	186.2	202.3
한국가스공사	438.0	344.3	288.4	347.7	385.4	388.8
한국철도공사	73.8	88.8	149.9	154.3	244.2	372.0
한국도로공사	92.5	93.7	97.8	99.6	97.1	94.3
한국수자원공사	19.6	29.1	76.6	116.0	122.6	120.6
계	108.5	114.6	128.4	152.0	176.1	188.4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이자보상배율은 이자비용과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1.0배 이상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를 갚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이자로 인해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부채의 위험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인식된다. 2013년 기준으로 요금사업기관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은 1.26배로 사업 운영을 통해 이자상환이 가능한 상황이다(〈표 4〉 참조). 하지만, 기관 간의 편차가 매우 큰 편으로 2013년에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세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이 1.0배를 기록한 반면, 철도공사와 전력공사는 1.0배를 크게 밑돌았고, 특히 철도공사는 2012년부터 2년 연속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도로공사도 1.0배를 조금 넘긴 수준이어서 크게 안정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수자원공사는 보상배율 수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부채 관련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0배 미만의 기관들은 당연히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현 상황보다는 안정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자보상배율은
 이자비용과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1.0배 이상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를 갚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이자로 인해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부채의 위험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인식된다.**
 ”

〈표 4〉 요금사업기관의 이자보상배율 추이

(단위: 배)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전력공사	-2.13	0.91	1.10	-0.32	-0.27	0.52
한국가스공사	1.44	1.16	1.53	1.41	1.48	1.78
한국철도공사	-2.61	-2.03	1.84	1.60	-0.36	-0.06
한국도로공사	1.03	1.06	1.09	1.09	1.21	1.03
한국수자원공사	6.89	3.91	2.93	2.37	1.27	1.42
전체	-0.66	0.76	1.30	0.62	0.33	1.2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3. 요금통제와 기관부채와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금사업기관의 부채의 규모가 크고, 빠르게 증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이 요금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요금통제에 의해 발생한 부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요금통제가 해당기관들의 부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공공기관이 최근까지 사업별 구분회계를 도입하지 않아 사업별로 부채발생액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추가적으로 요금통제가 부채에 끼친

“
**본고에서는 추가적으로
 요금통제가 부채에 끼친 영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해당기관들이 공개한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보상률이 100%이었을 경우,
 부채규모를 계산해 보았다.**
 ”

영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우선은 해당기관들이 공개한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보상률이 100%이었을 경우, 부채규모를 계산해 보기로 한다. 원가보상률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와 서비스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익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사업수익을 통해 원가를 얼마나 회수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서비스 공급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다는 의미로 기관은 사업을 운영할수록 손해를 입게 되어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각 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공요금 원가정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요금사업기관의 원가보상률은 100% 미만이었다 (<표 5> 참조).

<표 5> 공공요금 원가보상률 추이

(단위: %)

요금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기요금	77.7	91.5	90.2	87.3	88.4	97.9
도매 도시가스요금	87.5	80.4	86.1	87.0	86.3	87.2
철도요금	68.7	72.1	76.2	84.8	90.3	-
고속도로 통행료	76.4	75.8	82.0	84.0	81.4	81.0
광역상수도요금	82.2	81.4	84.5	84.9	87.4	84.5

주: 한국철도공사는 2013년 수치 미발표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원가보상률이 현행에서 100%로 증가할 경우, 총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총수익 증가액만큼 기관이 다음 연도에 차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이 금액만큼을 다음 연도의 부채총액에서 차감하였다. 요금수익을 통해 원가가 모두 보상되었을 경우, 2012년도 요금사업기관의 부채 시산액은 135.3조원으로 실제 부채 196.4조원의 74.9%에 해당한다. 개별기관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감소가 가장 큰 편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 실제부채보다 66.3%p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요금사업기관 중에서도 원가보상률 인상에 따른 부채감축 효과가 큰 이유는 서비스에 있어 원료비 의존도가 높은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부채규모에 비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0% 원가보상률하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후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부채의 규모도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원가보상률 100% 적용 시 실제부채 대비 비율

(단위: %)

기관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전력공사	82.2	82.8	79.8	75.9	71.9
한국가스공사	81.6	63.4	55.9	47.3	33.7
한국철도공사	92.6	90.4	88.2	87.3	-
한국도로공사	95.7	93.2	91.0	88.3	85.5
한국수자원공사	93.3	94.9	95.3	94.3	93.3
전체	86.2	82.8	79.3	74.9	-

주: 한국철도공사의 2013년도 총괄원가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제외

기관들이 산출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자료는 일단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의해 검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 기관의 자료보다는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외부기관의 자료에 근거하여 요금통제에 의한 부채 증가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9개 공기업의 부채증가액을 요금통제, 정책사업,

해외사업, 자체사업 등 원인별로 분리하였다. 이 중 5개 요금사업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요금통제에 의해 발생한 부채증가액은 전체 증가액의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기관별로는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에너지 공기업 사이에서 요금통제에 의한 부채증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SOC형 요금사업기관들은 요금통제에 의해 증가한 부채가 작은 편이었다. 초기 건설비용이 높은 대신, 원재료 비중은 낮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지만, 같은 SOC형 요금사업기관인 철도공사는 요금통제에 의해 증가한 부채의 비중이 40%에 이른다. 아마도 도로공사는 사업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 SOC 사업에 의한 부채증가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이 요금통제의 상대적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같은 정책사업 없이 통상적인 자체사업만 수행하였다면, 요금통제에 의한 부채증가액의 비율은 26.6%까지 올라간다. 한전과 가스공사도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지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제외할 경우, 요금사업의 비중이 각각 57.4%, 53.1%로 상승한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요금사업기관에서 요금통제가 부채증가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대체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에너지 공기업 사이에서
 요금통제에 의한 부채증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7〉 요금사업기관의 요인별 부채증가액

(단위: 억원, %)

기관명	요금통제	정책사업	해외사업	자체사업	부채증가 총액	요금통제 비중
한국전력공사	80,024	-	14,472	59,326	153,822	52.0
한국가스공사	57,525	-	19,603	50,771	127,899	45.0
한국철도공사	15,617	12,928	-	9,911	38,456	40.6
한국도로공사	12,949	36,500	-	18,589	68,038	19.0
한국수자원공사	4,643	85,525	-	12,828	120,996	4.5

주: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의 부채증가액 대상
 자료: 감사원 자료 재구성

요금통제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나, 요금통제가 존재할 경우 인산폭에 제한이 생겨 전반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요국과의 전기, 천연가스, 상수도의 1단위 소매가격을 비교해 보았다(〈표 8〉 참조). 2013년 기준으로 전기 소매가격의 경우, 한국은 가정용만 공개되었는데, 선택된 주요국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요 유럽국가의 전기 소매가격은 한국보다 2~3배 정도 높았으며, 주요국 중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도 한국보다 20%가량 높았다. 표에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분석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전기 소매가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산업용 천연가스는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용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표 8〉 주요국의 전기, 천연가스, 수도요금 비교

	용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전기	산업용	139.78	126.02	169.32	68.2	174.23	-
	가정용	228.86	193.36	387.63	121.16	242.14	101.42
천연가스	산업용	41.89	51.83	49.86	15.39	-	78.68
	가정용	76.67	89.64	94.61	34.05	-	75.80
수도		3.82	3.74	-	-	1.85	0.77

주: 1. 전기, 천연가스요금은 2013년 기준, 수도는 2007-2008년 기준

2. 전기요금의 단위는 USD/MWh, 천연가스요금의 단위는 USD/MWh GCV(Gas Calorific Value), 수도요금의 단위는 USD/m³

3. 영국의 수도가격은 England와 Wales 기준

자료: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4," 2014(전기, 천연가스), OECD,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2010(수도).

다.³⁾ 전기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순위가 낮지는 않지만, OECD 국가 전체 중에서 가정용 천연가스가격은 중하위권에 속해 있다. 수도요금에서도 한국이 주요국 요금의 2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구매력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와 마찬가지로 수도요금도 멕시코를 제외하고 21개의 조사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공요금 산정절차상의 요금통제 발생경로

요금인상 억제를 통해 요금사업기관들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온 배경에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컸으며, 그 배경에는 낮은 공공요금을 원하는 국민들의 압력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생산비용을 낮추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한 결과, 임기 대부분 동안 공공요금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밑돌았다. 현 정부 역시 요금사업기관의 부채감축안에서 공공요금인상은 제외시키는 등, 요금인상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의 여론을 의

식하여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이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공공요금을 통제하려는 동기는 어느 정부에서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공요금의 과도한 통제는 관련기관의 부채증가를 통해 재무적 리스크를 높임으로써, 기관의 재원조달비용을 높이거나, 기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악화시켜 본연의 역할과 기능마저 위축시킴으로써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또한, 임시적으로는 기관의 부채이지만, 결국에는 미래의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는 사용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를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시키므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정부가 물가인상억제를 위해 요금을 통제하고자 하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며,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통제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현재도 요금산정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장기간 공공요금이 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조정된다면, 이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해결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요금통제가 발생하

3) 미국은 가스생산국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직접 비교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는 원인분석의 선행조건으로 먼저 공공요금의 산정절차를 검토한 후 과도한 요금통제를 발생시키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한다.

가. 공공요금 산정절차

우리나라의 공공요금 산정은 원가보상주의로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소요된 제반 원가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총괄원가는 원료비 및 기타 비용의 합인 적정원가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닌 적정투자보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표 9〉 참조). 첫 번째 요소인 적정원가는 영업비용, 영업의 비용(지급이자는 제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인세의 합에서 영업의 수익을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다른 요소인 적정투자보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로 정의되며, 해당자산의 기회비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운전자금,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합인 요금기저에 자기자본 보수율과 타인자본 보수율의 가중 평균치인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표 9〉 총괄원가의 구성

총괄원가	적정원가	영업비용+영업외비용(지급이자는 제외)+법인세-영업외수익
	적정투자보수	요금기저×투자보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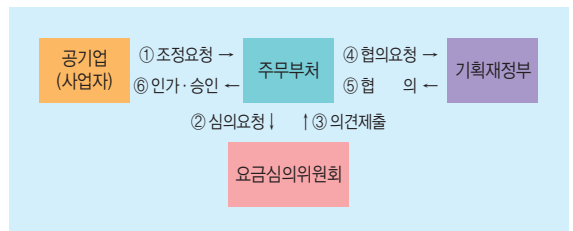
주: 1. 요금기저는 운전자금,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합
 2.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 보수율과 타인자본 보수율의 가중 평균으로 산출되며, 가중치는 전체자본 중 각 자본의 구성비임

중앙공공요금 협의에 참여하는 주체들과 각 주체의 역할, 주체 간의 상호작용은 [그림 1]에 도식화되어 있다. 공공요금 산정의 이해당사자는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기업, 공기업을 관

“
우리나라의 공공요금 산정은 원가보상주의로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소요된 제반 원가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리·감독하는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각 주무부처별로 요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참여한다. 각 요금별로 요금심의위원회가 존재하며, 위원장은 보통 주무부처 장관이 맡고, 각 부처의 담당공무원 등이 당연직 위원을, 공공·민간 각 분야의 대표자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요금의 종류에 따라 15~25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공공요금산정 협의절차



자료: 기획재정부(2013)

요금사업 공기업은 이상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공급비용의 변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기관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 요금의 승인을 주무부처에 요청하게 된다. 요금사업기관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는 요금심의위원회에 요금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요금조정 가부에 대한 의견을 정한다. 주무부처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요금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
**정부가 요금통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요금사업기관들이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데, 바로 원가산정의
 신뢰성의 문제이다.**
 ”

해야 하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시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양 부처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요금조정안을 인가·승인하게 된다.

각 요금이 이상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나, 개별 요금별로 독자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철도요금의 협의절차에 의해 요금의 상한만이 결정되며, 이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철도공사가 세부적인 요금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매 도시가스요금 결정 시 재료비의 산정 방식으로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는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가스의 공급에 있어서 환율과 국제유가가 심하게 변동하여 이를 요금에 즉각적이고, 탄력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에 따라 도입되었다.⁴⁾ 주무부처에서 도시가스용은 2개월, 발전용은 1개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하여, 2개월 전의 원료비와 비교하여 ±3% 초과 변동된 경우 위원회 심의나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도매요금에 반영한다.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 요금산정제도와 요금통제의 발생원인

1) 원가산정 시 세부규정의 불명확성

정부가 요금통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요금사업기관들이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데, 바로 원가산정의 신뢰성의 문제이다. 기관이 산정한 원가를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규제권자인 정부는 요금인상요구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기관의 원가산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이유는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이익이 상충하여 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대리인의 정보 우위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요금산정의 핵심과정인 원가산정상의 불투명성은 기관이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지를 남기고 있어 문제시된다. 예를 들어, 기관의 경영비효율에 의한 비용증가를 원가에 숨기기 위해서 산정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원가를 과다계상할 가능성이 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관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도록 하는 유인규제방식이 아닌 현행의 총괄원가제도가 유지되는 한 주인-대리인 문제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이에서 비롯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원가산정제도의 약점이 해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요금산정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되므로 기관들은 요금조정의 근거로서 총괄원가를 산정한다. 그런데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세부산정기준을 기관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 중 전자는 재무제표 개별항목에 따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계산되고 있으나, 요금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의 곱으로 계산되는 후자는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방식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는데, 현재 적정투자보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없는 상

4)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2011년에 도입이 결정되었으나 시행을 유보해 오다 2014년에 폐지가 결정되었다.

황이다(김성태(2014)). 실제로 감사원의 2014년도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다양한 방식에서 원가산정상의 오류로 총 8,642억원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 재평가분 등 상각비 과다산정, 적정투자보수 과다산정 등과 같이 요금사업 내에서의 오류도 있었으나,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 해외사업 담당 부서 경비를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명백한 오류도 발견되었다. 이는 기관이 원가산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요금사업기관들은 합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총괄원가를 계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가 익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도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나와 국민을 실망시키고, 불신을 키우면서도, 기관의 요금인상 요청을 수용하여, 국민을 설득시키기 힘든 환경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가검증체계의 미비

제도상의 미비점을 제외하고도 요금사업기관들이 원가산정 정보에 대한 비대칭적인 접근성을 이용하여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원가를 위법적으로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 파산 등의 위협이 없어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부채에 대해 끝까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원가만큼 보상해 주는 총괄원가방식하에서는 원가를 줄일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인 배경에 원가에 대한 정보 우위를 이용하여 요금사업기관들은 원가에 자신들의 비효율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는 정부가 원가정보에 대한 기관과의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런 측면에서 현행 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주무부처에 제출된 요금조정안

“
**파산 등의 위협이 없어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부채에 대해
 끝까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원가만큼 보상해 주는
 총괄원가방식하에서 원가를 줄일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산정절차도상에서 보여지듯이 심의위원회는 기관이 제출한 요금조정안의 적절성을 독립적으로 심의해야 하지만, 현재 주어진 기능 및 권한과 조직상의 한계 때문에 적절한 요금산정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현행 절차상 기관이 제출한 원가에 대해 검토와 판단을 하고, 결정권자에게 자문하는 유일한 주체임에도, 공공기관이 제출한 요금조정안에 대해서 가부의 의견만을 제출할 뿐 의견의 강제성은 없다. 심의의 성격과 방식도 현장 실사와 같은 본격적인 원가검증하고는 거리가 멀며, 주로 서면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요금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정보우위에 대한 견제기능도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인사적인 독립성 측면에서는 15~25명의 전체위원 중 절반 정도를 위촉직으로 임명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구성원과 전문가로 채우고 있으나, 당연직은 관련 주무부처의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채워지고 있고, 위원장도 주무부처의 장관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성이 아닌 셈이다.

“
**공적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공급자가 독점기업인 만큼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호한 환경이
 정부로 하여금 요금을 재량으로
 통제하여 장기간 인상이
 억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3) 관련부처 간 협의과정의 모호성

요금조정의 최종결정은 주무부처와 기재부와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두 부처 간의 협의이기는 하나 현행 절차에서는 결국 정부가 요금결정의 최종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관련법과 규정은 협의의 필요성만을 거론할 뿐, 협의 과정에서의 원칙이나 세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는 주무부처와 기재부 사이의 협의에 따라 요금조정안 통과와 가부가 달려 있다. 또한, 공식적인 산정절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요금인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장협의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요금조정이 결정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적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공급자가 독점기업인 만큼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호한 환경이 정부로 하여금 요금을 재량으로 통제하여 결국 장기간 인상이 억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무부처는 유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및 역할 수행과 재무적 안정성에 관심이 큰 반면, 물가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재부에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의 수단으

로서 요금조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⁵⁾ 협의절차상의 원칙이나 세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요금통제에 대하여 이해가 상충되는 두 부처가 협의를 한다면, 정권의 의지와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주무부처의 역할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요금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정책기조를 거스르면서까지 요금인상안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인상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에 현행 요금산정 절차는 세부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재량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필요시에도 요금인상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갖춘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천연가스요금에서도 모호한 유보조항이 존재함으로써 정부가 필요시 시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천연가스의 수급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과 국제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변동성이 큰 환율과 유가를 요금에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2개월 단위의 검토시기, 3%의 변동폭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운영해 왔다. 이러한 수치상의 기준들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국제원유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연동제를 일시 유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다소 모호한 기준에 기반한 유보권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장기간의 시행 유보로 연동제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원료비 연동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달성하

5) 기재부 내에서도 예산담당부서와 물가정책부서, 공공기관 관리부서 간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기재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둔 이유가 물가안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요금조정안 협의 시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재무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긴급한 경우에도 시행이 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유보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느슨한 유보기준은 기준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넘어서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장기간 이용될 수도 있음이 경험적으로 나타났다.

“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한다는 식의
임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결정이
어떤 방식에 따라
내려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

Ⅲ. 정책적 제언

1. 원가산정방식의 구체화

정부가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미시적인 요금규제를 넘어 물가안정을 위한 요금통제까지 관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바람과 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한 요금통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여, 효율적인 자원분배에도 걸림돌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을 설득하여 부담원칙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총괄원가방식 하에서 국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원가의 투명성이다.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가산정의 기준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원가산정방식의 불명확성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투자보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관들의 적정투자보수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적정보수율이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보수율이 낮은 타인자본비율을 낮춰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가를 과다산정한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기관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모호함이 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최근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주무부처 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 시 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철도운임 산정기준에는 자기자본보수율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위험 자산수익률, 시장위험프리미엄, 위험계수를 국토부장관이 소비자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 이익과 서비스 지속가능성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전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주무부처나 기관에서 자기자본보수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한다는 식의 임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결정이 어떤 방식에 따라 내려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원가검증절차의 제도화

요금산정절차를 가능한 한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기관의 순응 여부를 감독함으로써, 어느 정도 원가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절차와 기준이 기계적으로 고정되기는 어렵다. 근

“
**정부의 입장에서는 요금을
 통제하에 두고 싶은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구체화시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할 경우,
 정부는 다른 식으로 결정권의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
 ”

본적으로 공정보수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기관이 제출하는 요금인상안을 심도 있게 검증할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과다하게 산정된 요금인상분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으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증절차는 아니며, 사후적으로 밝혀져 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주무부처의 부실한 관리·감독만이 부각되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원가의 과다산정분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도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이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가검증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는 총괄원가 산정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요금 산정용 재무제표의 작성, 요금산정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원가검증과 합리적인 요금산정을 위한 환경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기재부가 회계전문인력과 전문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원가분석팀을 시범운영하면서, 분석팀을 통해 새로운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2013년도 원가를 검증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새로운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각종 비용 등이 규정에 따라 원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회계적인 검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현 수준의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실제비용의 수준이 적절한지 등의 내용적인 검증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적, 정규적인 검증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요금조정안 협의절차의 구체화

정부가 요금조정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요금협의과정이 모호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도상의 미비점과 모호함을 보완하여 정부가 재량으로 장기간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행태를 제한하는 것이 단기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원료비 연동제의 경우 명확한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유보권이 존재하고, 그 행사의 조건이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경우, 유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유보의 지속기간, 유보종료 후 사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임시적이지 않은 시행유보를 최소화하고, 사후적인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요금을 통제하에 두고 싶은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구체화시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할 경우, 정부는 다른 식으로 결정권의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제도를 사전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정부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부처 간 협의의 결과물을 두고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협의와 결정 단계에서 주무부처와 기재부의 역할은 요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두고, 각각 공공서비스 제공의 관리자와 물가통제당국의 입장에서 요금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물가안정성, 기관에 대한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요금조정안이 결정된다. 이러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의 고려요소와 결론 도출에 이르는 논리를 포함한 요금결정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독립적인 전문가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요금결정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공개와 독립적인 검토제도를 정부의 재량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상의 방안은 정부가 요금통제의 주된 역할을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요금통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 내라고는 하지만, 입장이 다소 충돌하는 두 부처의 협의에 의한 요금결정이기 때문에 기관의 재무적 안정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되기보다는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두 가치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공공요금을 관리할 독립적인 요금규제기관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가미보상분의 산정

공공서비스가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임을 고려하면, 공공요금 규제를 통한 물가안정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경우도 있다.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 공공요금은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히 원재료 비용이 오를 경우, 이를 한꺼번에 요금에 반영시키면, 경제 전체에 무리가 올 수 있고, 특정계층에는 매우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요금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재무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요금통제가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점을 국민과 규제권자가 인식함으로써 과도한 요금통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요금통제가 있어야 한다면,
요금통제에 따른 미보상원가를 계산하여
향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계획을 체계화 및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명확한 요금산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원가검증 및 회계적, 분석적 검증을 통해 총괄원가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요금이 산정되었지만,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요금통제가 있어야 한다면, 요금통제에 따른 미보상원가를 계산하여 향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경우 요금인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계획을 체계화 및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요금통제에 의해 늘어나는 기관의 적자와 부채규모가 정확하게 계산되고, 공표됨으로써 요금통제의 비용을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통제완화와 요금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요금통제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무상태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 현행 요금산정절차상의 미비함으로 인해 요금통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로를 짚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요금통제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비록 구분회계의 부재와 같은 제도상의 미비함과 자료의 부족으로 요금통제와 기관의 부채증가의 인과관계를 만족스러울 만큼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였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장기간 요금인상이 억제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그 연관성은 인지할 수 있었다. 요

금통제의 근원은 공공요금과 물가의 안정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제에 의한 비용이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므로 정부는 손쉬운 통제보다는 어렵더라도 요금합리화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부나 요금통제를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는데,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장기간의 인상억제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맞물려 요금통제에 의한 기관들의 재무상태 악화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요금산정제도의 미비함에서 요금통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경로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크게 기관이 적용하는 원가산정방식의 모호성, 원가검증제도의 부재, 부처 협의과정상의 모호함으로 인한 정부 재량권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보고는 원가산정방식을 구체화할 것,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기관의 산정원가를 검증할 것, 정부부처 간의 요금조정안 협의절차를 구체화시키고, 사후적으로 협의과정을 공개할 것, 장기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요금규제기관 설립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글머리에 밝혔듯이 본고에서는 현행 요금산정제도인 총괄원가방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현실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총괄원가방식을 고수한다면, 규제비용의 지속적인 발생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요금사업기관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기관의 불만과 반발도 커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등 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유인규제방식의 도입도 고려하여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적정요금만을 수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가스공사)」, 2014.

_____, 「감사결과보고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 실태」, 2013.

권순조,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4.

김성태, 『한국전력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한국개발연구원, 2014.

김찬수, 『공기업의 재무건정성 및 재정위험 연구』, 감사연구원, 2012.

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 2013.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4.

허경선·박진,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4,” 2014.

OECD,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2010.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www.kgs.or.kr>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www.ex.co.kr>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www.kwater.or.kr>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www.kepco.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공공정책포럼



■ 제39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부3.0시대의 공공기관의 역할

개요

- 주 제 정부3.0시대의 공공기관의 역할
- 일 시 2015년 2월 6일(금),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A(별관 B1)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10 인사말씀
 송대희 좌장
 - 08:10~09:00 주제 발표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
 - 09:00~09:30 자유토론
 -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5년 2월 6일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A(별관B1)에서 『정부3.0시대의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공공기관 연구센터가 개최한 제39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송대희/좌장

오늘 제39회 공공정책포럼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의 송희준 위원장을 모시고 정부3.0시대의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고자 한다.



주제발표 요약

정부3.0시대의 공공기관의 역할

송희준/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

I. 정부3.0의 기본방향

정부3.0의 추진배경에는 국정운영의 혁신 필요성과 기존의 정부3.0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자리잡고 있다. 기존의 정부3.0이 가치의 개념화 및 내면화에 실패하고, 공공데이터의 양적 개방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 정부와 유능한 정부에 대해 소홀하였다. 그리고 추진 주체였던 행정자치부와 타 부처 간 인식차이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2014년 7월에 정부3.0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주요 추진방향은 국정비전의 내재화와 수요기반의 강화이다. 즉 국민에게 절실한 수요중심 서비스 전달,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 투명성 제고로 공동체적 신뢰와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원회의 주도하에 범정부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

였으며, 민간의견과 자원을 정책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를 구현하였다.

비전체계를 보면, ‘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위해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협력과 공유 소통과 개방을 통한 국민과 정부(중앙-지방-공공기관) 간 개방적 정책 생태계로 정하였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와 관행혁신, 초연결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한다. 현재의 일방향적 서비스, 일선기관만 국민과 접점을 가지고 계층적·경쟁적 사일로(silo)의 정부에서 벗어나 미래에는 양방향적 서비스 제공, 국민과 다양한 접점을 마련하며 수평적·협력적 매트릭스가 되고자 한다.

II. 주요 추진과제

1. 서비스 정부

‘필요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라는 서양 속담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가 진정한 정부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정부 달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국민신청-정부승인-제도’를 정부제안-국민확인’제도로 전환하려 한다. 연말정산이나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 중소기업지원 등 긴급하거나 고수요 현장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 시행을 위한 전수조사 및 단계적 도입을 실시하려 한다. 그리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촘촘히 연계하는 O2O(online-to-offline)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민간 연계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국민이 익숙한 민간 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려 한다.

서비스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 유성구의 사

망신고에 따른 후속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사망신고 후 자동차소유권 이전, 유족연금, 상속재산 등 개별 방문과 신청을 필요로 했던 일에서 지자체에 사망신고 한 번으로 후속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신청·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를 조금 더 편리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역사의 종말』에서 자유주의가 인류 역사의 종말이며 더 이상 이념적으로 진화할 수 없을 것이라 한 적이 있다. 이에 빗댄다면 저능 행정서비스에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 이상으로 더 진화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정부는 융합된 하나이어야 한다. 협업과 통합적 자원관리를 통한 정책문제 해결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 협업지도 등 협업 정책수요의 과학적 도출이 필요하며, 조직이나 인사, 예산, 평가, 성과관리 등 협업을 일상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범정부 지식관리추진을 통해 공공지식과 데이터를 클라우드 저장소로 통합 및 활용하려 한다. 그리고 공무원 업무 소프트웨어(한글, MS-OFFICE 등)를 웹 오피스로 전화하여 개인PC 시대를 마감하도록 할 것이며 클라우드 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액티브-X를 폐지한 이후 정보보안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증거기반의 과학행정(진단, 예측, 처방 등)을 구현하려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모델 및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에서 과학적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하여 과학적 예측행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공급자 위주의 관광홍보를 시행하였으나 SNS를 통한 해운대 관련 부정요인(인파, 비싼 숙박요금,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고 긍정요인(해수욕장, 자연경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게스트하우스 시설 지원 및 안내강화, 대중교통 안내체계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성과이다.

해운대구의 성과 외에도 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온라인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을 일원화한 사례도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기관별로 분야에 따라 상담창구를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해왔으나 정부3.0의 일환으로 분쟁조정 간 단일화된 온라인 분쟁상담 창구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협업기관 간 시스템 공유, 예산절감 및 상담프로세스 체계 단일화로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3. 투명한 정부

그리고 투명한 정부 달성을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재정비하여 국민과 정부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적 관심영역의 정보공개 방법을 혁신하려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의 우선순위와 접근방법을 개선하려 한다. 고품질, 고수요의 공공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이렇게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보장, 오픈 플랫폼 방식의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데이터 개방과 국립공원 맞춤형 탐방지도 서비스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탐방객이 가장 궁금한 정보 1위인 탐방로 정보를 공개하였다.

전국 560개소 1,855km 탐방로를 등급기준에 따라 GPS 측량으로 난이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23% 저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4. 과제관리

정부3.0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과제예산은 정보화 예산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제안·조정하도록 하고 변화관리는 핵심과제 중심의 분야별 '정부3.0 선도기관' 선정 및 확산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중심의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며,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정부3.0 평가체계의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할 생각이다. 그리고 법령개선 TF를 구성하고 정부3.0 관련 법령 및 행정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려 한다. 그리고 국민 접점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정부3.0 성과에 대한 기획 홍보 및 온라인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다.

Ⅲ. 공공기관과 정부3.0

공공기관의 정부3.0 확산수단으로 경영평가를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3.0과 관련하여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정부3.0의 체감성과 창출 추진을 위해 추진기반 및 중점과제 실적평가를 기조로 하여 기관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표 설계로 평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평가대상은 62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강소형 기관은 2015년 평가부터 포함된다. 정부3.0 평가는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지표 중 하나로, 평가항목은 추진기반(30점)과 중점과제 성과(70점)로 100점 만점 평가 후 1점 또는 1.5점으로 환산된다. 추진기반(30점)의 평가지표에는 ① 기관장 정부3.0 추진의

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노력도(20점), ② 정부3.0 변화관리 실적(10점)이 있으며, 중점과제 성과(70점)에는 ③ 사전정보공표 실적(20점), ④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추진 노력도 실적(25점), ⑤ 기관 간 정보공유 실적(10점), ⑥ 맞춤형 서비스 추진 실적(15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확산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경영평가를 통한 정부3.0 확산이 부채, 방만경영 등 숙원과제에 대한 강한 조치내용을 담은 정상화에 초점을 두어 창조경제나 혁신경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향적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로 포함하여 다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으로서는 미흡하다. 또 '유능한 정부' 협업과제의 발굴 및 선정에 있어 대중적이거나 일회성인 협업과제 발굴에 머무르고, 협업 네트워크를 내재화하기에는 부족하며 정보화 투자도 여전히 재래적인 사일로(silo)식 시스템 개발 관행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투명한 정부'의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추진 중이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질적 성숙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한계이다.

향후에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화하여 사회 복지나 중소기업 등 취약·사각계층 서비스의 선제적 정부제안-국민확인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은 금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협업, 지식경영, 클라우드 등 유능한 정부를 제도화하려 한다. 협업 네트워크를 사회 체질화하는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클라우드, 모바일, 초연결 환경에 맞는 통합적 지식관리시스템 및 정보보안 체계를 장착하고 ICT 활용 및 데이터 기반,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과학행정의 내면화를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확대와 데이터개방의 질적 고도화를 이룰 것이다. 비공개정보와 정보 부존재 유형을 축소하고, 고가치, 고수요, 고품질 데이터의 우선개방 및 민간-공공 상생의 오픈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 질의응답

송대희/좌장

친절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발표 중에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서비스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감동적인 것 같다. 민간 카드업체들이 맞춤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공공기관도 이처럼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에게 감동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한상열/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정부3.0에서 필요한 협업에 대해 의견을 여쭙보고 싶다. 기관 간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의 업무를 깎아내리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는 가운데 기관이 제공하기 힘든 정보도 있을 수 있어 무조건적인 공개보다는 정보공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이 궁금하다.

송희준/정부3.0위원회 위원장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공간은 과거보다 더 좁아졌다. 그만큼 공공부문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협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협업이 실패했을 때 생겨나는 공유지의 비극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률,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공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힘들다. 결국 판례와 외국사례들을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박영범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협업이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송희준 / 정부3.0위원회 위원장

일리 있는 지적이다. 협업을 통한 성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정권교체에 따른 변동은 막기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 간 업무 경계에 있는 영역은 여러 기관이 협업해야 하는데, 제도화를 통해 협업이 성공했을 때의 인센티브 외에도 실패했을 때의 책임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침범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때문에 민간영역을 고사시켜서는 안된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라도 인식하고 있다.

오재인 / 단국대 교수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 발표 중 말씀해주신 해운대구 외에도 농식품부, 서울시의 심야버스, 기상청 스포츠마케팅, 관세청 사례, 국토부의 공간정

보 등 파급효과가 큰 사례가 많다. 이를 정부3.0에 접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송희준 / 정부3.0위원회 위원장

혹시 올 3~4월까지 개발될 수 있는 사례를 알려주 시면 관련 사항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안기영 / 한국환경공단 이사

분명하고 쉬운 메시지 전달에 대해 감사드린다. 정부3.0을 추진함에 있어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하겠다는 단순한 체계보다는 정부동반성장 평가처럼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우수한 사례만 보고 따라가기에는 기관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컨설팅을 해나가며 실제로 추진하는 인력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송희준 / 정부3.0위원회 위원장

좋은 지적을 주셔서 감사하다. 정부3.0 추진에 있어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컨설팅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컨설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사례를 들자면, 정부법무공단에서 나홀로 소송에 대한 정부3.0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단일기관보다는 협업의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여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위원회 내 전문위원회가 있어 필요하실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나 중앙공공기관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양창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본부장

공공기관 간 외에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주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정보공개나 공공데이터 공개 건수 중심의 평가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정부3.0에 대해 국민 인지도는 불과 34% 정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위원회에서 언론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송희준/정부3.0위원회 위원장

중앙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 특히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더욱 필요할 것이라 본다. 전국을 하나의 협업권으로 인식하여 혁신도시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관 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이나 모바일 기술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문화적인 부분은 따라올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부3.0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지적자산 정보공개나 공공데이터 공개의 건수 위주의 평가방식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접근성이 높고 질적인 정보공개가 중요하지만, 평가는 계량지표이기 때문에 건수 이외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흥

보하고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려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성진/법무법인세종 파트너·변호사

검찰, 경찰, 법무부의 정보시스템 통합하는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정부3.0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기관 간의 협업은 단순한 정보교류에 대한 평가보다는 실질적인 협업에 대해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공개 건수보다는 정보공개를 위한 사전적 효과와 그리고 공개된 후의 파급효과 등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보면 국민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다 보면 데이터의 주인인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리라 본다.

송희준/정부3.0위원회 위원장

미국에서는 1980년대 정부실패 이후 신자유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인센티브가 중요해지고 인센티브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경영평가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제도로 인해 협업이 자리잡기 힘든 문화가 생겼다. 공공기관 외에 정부부처끼리도 협업보다는 경쟁을 하게 되어 국가적인 일을 추진하기 힘들어졌다.

그런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의 토대가 되었던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이 2010년 대대적으로 수정

되었다. 수정된 법률에서는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동으로 평가받도록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수정 내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자치부의 지금과 같은 협업 포인트로는 부족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데이터 개발이나 정보공유 활성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하게 되는 문제는 고민이 많다. 결국은 법률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판례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옥동석/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협업은 같은 조직 내에 있거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에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공법상, 그리고 사법상의 계약이 지켜지면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른 나라의 경우 행정계약을 통해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간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구속력 있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3.0위원회에서도 협업과 관련된 행정계약제도에 대해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송희준/정부3.0위원회 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하다. 협업은 공유자원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내용 중 공유지의 비극이 아닌 공유지의 희극으로 만들자,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여 상호간 Win-Win하자는 내용이 인상 깊었다. 이는 곧 악순환의 고리와 선순환의 고리의 문제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협업이 이루어지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

정계약이라는 신공공관리적인 원리를 협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조봉환/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올해 1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정상화 대책은 투명성과 유익성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알리오 시스템 역시 개선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투 정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더불어 알리오 시스템에 올라가는 정보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경영평가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신경 써 주셨으면 한다.

박규호/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난방공사의 정부3.0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처럼 한전 역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210만 명의 고객에 대해서 정부기관과 지자체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전의 고객이 2억 5천만 정도인데 이들의 전기사용량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고객의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기업운영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밀양의 송전선과 관련하여 갈등문제가 있었는데 갈등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실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질적인 개선이 중요할 것이다. 공정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이 평가에 충실히 임했을 때 기관에 도움

이 되는 평가가 되었으면 한다.

송희준/정부3.0위원회 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다.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부3.0을 추진하겠다.

마무리말씀

송대희/좌장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3.0과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 역시 세계에서 앞서나가고 있고, 앞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3.0이 21세기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면 한다. KIPF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5-02

요약

- 이탈리아는 조세 관련 내용을 포함한 투자촉진 법령(Urgent measure for investments)을 2015년 1월 24일에 공포함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혁신적 창업기업 및 혁신적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네덜란드는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 변경 시행령을 2015년 1월 27일에 공포함
 - 합병 및 분할 관련 조세특례 적용 시 납세자 편의 확대 및 기타 조세특례 요건들에 대한 세부 해석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아일랜드는 2015년 1월 30일 조세회피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사면(Settlement Opportunity) 지침을 발표하였음
 - 동 지침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미납가산세 일부 감면 및 부가추징세액 면제를 제공하는 지침임
 - 세무 당국은 조세사면을 이용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시 미신고 납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함

- 2015년 2월 2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2012년에 제안했던 ‘기업세제 개혁(business tax reform)’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담긴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함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최소 19%의 과세 방안, 다국적기업의 과거 미국으로의 미송금 소득에 대한 14%의 일시적 과세 방안 등을 포함한 ‘국제조세 개혁 조치’를 담고 있음
 - 또한 적격 소규모 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의 ‘소규모 사업자 세제혜택 조치’와 연구세액공제 및 신시장세액공제의 영구화 규정 등의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음
 -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자본이익에 대한 최고세율의 인상, 버핏률에 따른 공정분배세(fair share tax)의 도입 등을 포함한 ‘중산층 지원 및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를 담고 있음

1. 이탈리아의 조세 관련 법령(Urgent measures for investments) 공포¹⁾

- 이탈리아는 투자촉진 관련 조세정책이 반영된 법령(“Urgent measures for investments”, Law Decree No. 3/2015)을 2015년 1월 24일자로 공포함
 - 동 법령은 2015년 1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하며, 조세 분야에서는 주로 연구개발 활동 및 혁신적 기업

1) www.ibfd.org 및 www.ey.com 참조

등에 대한 조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 Patent box 제도(지적재산권 활용에 따른 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비용공제 범위 등을 확대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Patent box 제도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취득한 특허, 브랜드,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을 라이선스하거나 직접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관련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2015년도에는 해당 소득의 30%, 2016년도에는 40%, 2017년도부터는 5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이번 개정에 따라 Patent box 제도의 적용 대상 거래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요건이 완화됨
 - 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상표권, 실용신안 및 모델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기존에는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경우 대학 또는 기타 연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대학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관계사와 연구용역계약(research contracts)을 체결하는 경우로 확대함
 - 감면 대상 소득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확인(ruling agreement)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축소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직접 활용하여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로 한정함
- 외국기업의 이탈리아 지점에 대해서도 혁신적 창업기업 (innovative start-up companies)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함
 - 유럽경제지역(EEA) 내 소재 기업으로서 이탈리아

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혁신적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혁신적 중소기업(innovative SMEs)에 대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함
 - 혁신적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세액공제를 창업 이후 7년 이하의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 혁신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기업이 총생산금액(gross value of production) 또는 생산원가(cost of production)의 3% 이상에 상응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할 것
 - 박사학위 또는 기타 관련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것
 -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소정의 특허권 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할 것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2. 네덜란드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 변경에 대한 시행령 발표²⁾

- 네덜란드는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조세제도 중 일부를 변경한 시행령(BLKB 2015/34M, BLKB 2015/38M 및 BLKB 2015/33M)을 2015년 1월 27일자로 발표함
- 동 법령은 2015년 2월 7일부터 효력을 발하며, 2015년 1월 27일까지 소급효를 가짐
- 네덜란드는 합병 및 분할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에서는 당해 특례제도 중 일정 요건을 수정하고 일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네덜란드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는 기본적으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합병 및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특례 적용 요건은 주로 합병 또는 분할 당사 회사의 세법상 특성,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회사들이 소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회사들의 신청에 의해 과세당국의 조사를 거쳐 특례를 부여할 수도 있음
- 합병 관련 개정 사항은 주로 이월결손금 사용에 대한 납세자 편의 확대 및 합병 관련 부채 평가 방법 변경에 관한 것임
 - 합병 당시 존재하는 이월결손금 사용 관련 신청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

이 가능하도록 함

-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부채에 대한 재평가를 현행과 같이 명목가액(nominal value)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정가액(fair market value)을 적용하도록 함
- 분할 관련 개정 사항은 관련 요건들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제시 및 특례 적용 절차 관련 납세자 편의 증진 등으로 구성됨
 - 재평가적립금(revaluation reserve)이 있는 경우의 분할 거래에 대한 자세한 해석 제시
 - 관련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승인하는 절차 도입
 - 해외 고정사업장에 대한 감면, 지분참여면세(participation exemption) 및 해외사업소득 공제 등과 관련된 요건들을 추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3. 아일랜드-조세회피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사면 지침 발표³⁾

- 아일랜드 정부는 1월 30일 조세회피 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사면(Settlement Opportunity)의 상세지침을 발표함
 - 조세사면은 2014년에 있었던 조세회피 거래의 내용을 자진신고 받아 과세하기 위한 것임
 - 이 제도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납세자들은 거래에 대한 본세 및 납부기한 지체로 인한 미납 부가산세 중 80%만 납부하면 됨
 - 대상 납세자는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부가

²⁾ www.ibfd.org 및 www.deloitte.com 참조

³⁾ http://www.revenue.ie/en/practitioner/ebrief/2015/no-162015.html

가치세, 자본 취득세, 인지세, 보편적 사회보상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임

- 그리고 국세청이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거래 적발 시 부과하는 부가추징금은 면제받음
 - 부가추징금은 본세에 대해 최대 20%까지 부과함

■ 조세사면(Settlement Opportunity)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 형태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함

- ‘Taxes Consolidation Act 1997’의 제811조에 따라 조세수입위원회에서 지정한 조세회피 거래
- ‘Taxes Consolidation Act 1997’의 제811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거래
- 국세청에 의해 ‘권리남용(Abuse of Rights)’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가가치세 회피 거래

■ 동 조세사면은 시기적으로 2014 예산안이 발표된 2014년 8월 23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

- 8월 23일 이후에 일어난 거래는 2014 재정법(Finance Act)에 있는 강화된 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임
 - 강화된 GAAR은 조세회피 거래 적발 시 본세에 대한 추징금이 30%로 인상되었음

■ 납세자는 조세사면을 이용할 때 적극적인 조세회피자진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신고 시 미납세액 전액과 미납가산세의 80%를 납부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함
-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도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세무 당국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조세사면을 이용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조세회피 납세자는 강도 높은 조사를 당할 것이라고 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2016년⁴⁾ 예산안 발표⁵⁾

■ 2015년 2월 2일 오바마 행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FY2016 Revenue Proposals)을 발표하고 동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은 28%로 인하하고 세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조세정책으로 했던 과거 2012년의 오바마 대통령의 ‘기업 세제개혁(Business Tax Reform)’ 제안을 주요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부담을 ‘가속 감가상각제도(accelerated depreciation)’의 폐지, 부채조달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완화하고자 함

■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 ‘개인세제(individual taxation)’에 있어서는 자본이득세제(taxation of capital

4)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5) 미국 재무부, <http://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j19754.aspx>



gains)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일정한 고소득 개인에게는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제안함
 - 고소득 개인이란 통상소득(ordinary income) 과세 시 최고 한계세율 39.6%가 적용되는 개인을 말함

- 한편, 세법개정안 외에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이번 예산안에서의 재정지출 규모는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서 정한 지출 기준금액보다 740억달러를 초과함
 -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과거 '해외 미송금 소득(unrepatriated foreign earnings)'에 대한 일회적(one-time) 과세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6년여로 예상되는 운송 기반시설 투자(4,780억 달러 소요) 지출을 제한함
- 다음에서는 분야별로 주요 세법개정안을 설명함

가. 국제조세 개혁 조치

- 미국 내 다국적기업의 '해외 소득(foreign income)'에 대해 과세이연하지 않고 최소 19%의 세율을 적용하여 즉시 과세하는 것을 제안함
 - 이 규정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이전시키고 소득(profits)을 유보시키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최소세율 19%는 추정된 '해외실효세율'의 약 85%수

준에서 결정한 것임

- 해외 소득에 대하여 즉시 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충분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최소 세율 부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과거 과세되지 않았던 미국 기업의 누적, 유보되었던 해외 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한시적 과세(one-time tax)'를 할 것을 제안함
 - 이 규정에 의해 14%로 과세된 소득이 추후 미국으로 송금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 과세는 없음
- '회사전환 방지규정(anti-inversion)⁶⁾'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조세회피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 첫째, 내국법인에 대한 '주주 지속요건(shareholder continuity)' 중 80% 요건은 50% 요건으로, 60% 요건은 0% 요건으로 그 기준을 낮춤
 - 둘째, 주주 지속요건과는 상관없이, i) 내국법인의 주식 공정가치가 외국회사의 주식 공정가치보다 크거나, ii) 외국회사를 포함한 모든 '관계회사 그룹(affiliated group)'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관리·통제되고 있고 해당 외국회사가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전환거래(inversion transaction)으로 간주됨
-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foreign-parented group)'의 미국 내 관계회사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

6) 주식교환 등을 통해 해외에 모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내 자회사를 동으로써 CFC 과세제도 등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간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현재 해외 모회사의 내국 자회사의 지분 요건이 80% 이상인 경우 주식 교환행위는 부인되고 모회사는 세무목적상 미국 기업으로 취급되며, 지분 요건이 60%~80%이면 해당 거래는 전환거래(inversion transaction)로 보아 모회사의 일정한 이익을 과세할 수 있음

- 현행법하에서는 미국 내 자회사로 하여금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한 후, 미국 자회사 소득의 절반까지 이자비용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
- 개정안에서는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미국 내 관계회사의 총이자소득+당해 해외 다국적기업의 순이자비용 중 미국 내 관계회사가 비례적으로 배분받는 금액'으로 할 것을 제안함

■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해외로부터 미국 내에 내재화(insourcing)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불이익을 가할 것을 제안함

- 미국 내에 사업장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지출한 적격 비용의 20%를 법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함
- 반면 미국 내의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 이전거래를 통한 소득 이전행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

- 저세율(또는 '0'세율) 국가에 소재한 해외 관계회사로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일정한 이익에 대하여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함
- 무형자산 중 인적자원(workforce in place), 영업권(goodwill),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유형 또는 금융자산이 아니면서 개인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실질적 가치가 있으며, 납세자에 의해 소유 · 통제되는 '여타 항목(any other item)'도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킴

■ 다음과 같은 국제조세 분야에서의 세무상 허점을 제

거할 것을 제안함

- 미국 세법과 해외 세법 간의 거주자 판정의 비일관성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무국적 소득(stateless income)' 발생 행위를 막기 위하여, '혼성 계약(hybrid corporate)' 형태를 사용한 국제거래를 제한함
- 최근 변화된 인터넷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을 명확히 함

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 조치

- 2014년도로 종료 예정인 적격 감가성 자산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손금)처리 규정을 2015년 이후에도 연장,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함
- 2014년 현재 비용처리액 한도는 5십만달러이며, 2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한도가 비례적으로 축소되게 되어 있음
- 이번 제안에서는 2015년 이후에도 동 규정이 영구화하며, 2017년 이후에는 한도(5십만달러) 및 임계점(2백만달러) 금액을 물가와 연동시킴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안정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주식 양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2010년 9월 27일 이후에 발행되고 5년 이상 보유한 적격 소규모 기업주식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본이득세를 100% 면제함
- 양도차익 비과세액을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킴
- 6개월 이상 보유한 소규모 기업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개시비용(start-up expenditures)의 사업 첫 해 즉시 손금처리 한도액을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사업 첫 해 손금 한도를 현행 5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인상함
- 피고용인 및 그의 가족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주의 건강보험 기여금 불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함
 - 기존 고용 정규 근로자수 '25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
 - 이에 따라 세액공제의 단계적 축소 기준 근로자 수도 기존 10~25인에서 20~50인으로 변경함

다.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

- 혁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세액공제(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ax credit)의 공제액을 늘리고 영구화할 것을 제안함
 - '대체간편법에 의한 세액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의 경우 공제율을 14%에서 18%로 인상함
 - 기업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면연장 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동 세액공제를 영구히 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2014년 종료 예정인 '미국인 교육기회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제도를 영구히 함
 - 중등교육과정 이후(post-secondary education)의 학생에 대해 지출하는 등록금이나 관련교육비

에 대해 4년 동안 매년 2,5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임

- 또한 실직 후 1년 내에 교육 훈련을 받고 6개월 내에 취업하는 '장애를 입은 퇴역 군인(disabled veterans)'에게도 관련 교육비용에 대해 AOTC를 받을 수 있게 함
- 클린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세제 혜택 확대를 제안함
 -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를 영구화함
 - '주거와 관련된 전기생산 세액공제(credit for residential energy property)'를 개인에게도 허용함
 -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renewable energy investment tax credit)'를 영구화함
- '신시장 세액공제(New Market Tax Credit)' 적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신시장 세액공제 적용을 영구화함
 - 신시장 세액공제란 저소득 지역사회(Low income communities)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부동산 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임
 - '적격 지분 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로 인하여 신시장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라. 중산층 가계 지원 및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

- 고소득 개인의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자본이득과 적격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0%에서 24.2%(순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8%)로 상향시킴
 - 자본이득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통상소득 수준이 457,600달러를 초과하여 통상소득 한계세율 39.6%가 적용되어야 함
- 과도한 위험부담(risk-taking) 투자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회사에는 그들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7 basis 포인트의 수수료(fee)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동 수수료의 부과대상은 자산규모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ies), 금융중개회사(financial broker-dealers) 등이며, 해외 기업의 미국 자회사도 포함됨
- ‘맞벌이 부부(two-earner married couples)’에게 연 500달러를 세액공제 해주는 ‘맞벌이 가구 세액공제(second earner credit)’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약 2,400만 가구가 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함
- 소득세율 33% 이상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을 제한할 것을 제안함
 - 고소득층에 대하여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나 특정 비과세(certain income exclusions) 등의 산정 금액이 과세소득의 28%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제한함
- 일정한 고소득자에 대하여 공정분배세(fair share tax)를 부과하도록 하는 버핏룰(Buffett Rule)을 시행할 것을 제안함
 - 일정한 고소득자란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가계소득기준으로 1백만달러 이상, 기혼자 개별신고기준 50만달러 이상인 자를 말함
 - 고소득자에게 조정총소득의 최소 30% 이상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함
- ‘회사 전용기(corporate jets)’나 ‘일반 여행용 비행기(general aviation passenger aircraft)’ 취득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 현행법하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계약상으로 여객,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항공사 보유 비행기의 경우 7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고, 이 이외의 비행기는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회사 전용기나 일반 여행용 비행기의 경우 적용되었던 특별 감가상각제도(5년 상각)를 폐지하고 7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 헤지펀드 매니저와 여타 유사한 투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을 통상소득으로서 과세할 것을 제안함
 - 현재 투자파트너십의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에 대하여 자본이득세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분배금을 통상소득(ordinary income)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함
 - 자본이득세 세율(20%)은 미국 중산층이 부담하는 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낮음
- 2017년 이후부터는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수준을 2009년 수준으로 영구히 상향함



- 최고세율은 상속세(estate tax), 세대생략증여세⁷⁾(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증여세(gift tax) 모두 45% 수준으로 인상함
- 면제한도(exclusion amount)는 상속세와 세대생략증여세의 경우 350만달러, 증여세의 경우 1백만달러로 인하함
 - 면제한도에 물가수준과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음

Infrastructure Bonds)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공항, 도크 등 해당 프로젝트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유여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채권을 발행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마. 기반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

- 주정부·지방정부의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패스트 포워드 채권(America Fast Forward Bonds)'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통적 비과세 정부채권(traditional municipal bonds)' 투자에 미온적이었던 연금펀드나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고안한 것임
 - '패스트 포워드 채권'은 '전통적 비과세 정부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연방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과세 채권임
 - 패스트 포워드 채권은 주로 정부차원의 기반시설 건립 프로젝트 자금조달,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될 것임
-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민간-공공 부문 파트너십 제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과세 사적사업채권(private activity bonds)인 '적격 공공 기반시설 채권(Qualified Public

7) 세대를 건너뛰어 자녀 이후 세대에게 직접 상속 또는 증여하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목임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 테러리즘, 우크라이나, 그리스, 경제 통화 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관련 논의(2015.2.12.)¹⁾
 - (테러리즘 관련) 시민 안보, 급진주의 방지, 국제적 공조 확보 등 테러 및 극단주의의 위협에 대한 EU 회원국의 대응 강화에 합의
 - (우크라이나 관련) 민스크 협정(Minsk agreement)²⁾ 결과와 관련해 휴전을 준수하고 갈등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때까지 지원할 것을 합의
 - (그리스 관련) EU 정상들은 그리스 신임총리와 그리스 경제 상황에 대하여 논의
 - (EMU 관련) 구조 개혁 이행 등 유로 지역의 경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논의
 - * 옹커 집행위원장은 EMU 프레임워크의 결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 향후 논의를 위한 준비 등을 담은 EMU 관련 Analytical Note³⁾를 발표함
- EU 재무장관회의 개최, 유럽 투자계획, EU 예산 등 논의(2015.2.17.)⁴⁾
 - (유럽 투자 계획) 투자 계획을 2015년 3월까지 합의

하기로 확정하고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EFSI) 설립에 대해 논의

- EFSI 상설화는 다년간 운영한 후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
-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의 합의를 거쳐 EFSI를 유럽투자은행 산하에 설립
- (European Semester) 집행위원회의 연간성장보고서(Annual Growth Survey: AGS),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AMR) 채택⁵⁾
- (EU 예산) 2016년 EU 예산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모든 수준에서 예산 규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재정건전화와 성장을 위한 투자 간의 균형을 강조
- 이 외에도 2014-2020 다년도 재정체계(MFF) 관련 검토, G-20 회의 관련 후속 조치 등 논의
- 유로그룹,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합의(2015.2.24.)⁶⁾
 - 유로지역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그리스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
 - (그리스 개혁안) 그리스는 유로그룹의 요청에 따라 조세정책 개혁, 부정부패 척결, 공공부문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혁안을 제출함(2015.2.23)

1)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news/2015/02/20150213_en.htm

2)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 정상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 합의 도출

3)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 *Preparing for Next Steps on Better Economic Governance in the Euro Area* 참고 (http://ec.europa.eu/priorities/docs/economic-governance-note_en.pdf)

4)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fin/2015/02/17/>

5)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4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6)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5-4488_en.htm
EUBusiness: <http://www.eubusiness.com/news-eu/greece-politics.zyy/>



〈표 1〉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2014년 4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¹⁾)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4				2014			
	Q1	Q2	Q3	Q4	Q1	Q2	Q3	Q4
벨기에	0.4	0.1	0.3	0.1	1.2	1.0	1.0	0.9
불가리아	0.1	0.3	0.4	0.3	1.5	1.8	1.5	1.2
체코	0.6	0.2	0.4	0.2	2.6	2.3	2.4	1.3
덴마크	0.2	0.1	0.4	-	0.4	1.2	0.9	-
독일	0.8	-0.1	0.1	0.7	2.3	1.4	1.2	1.5
에스토니아	0.1	0.9	0.4	1.1	0.4	2.4	2.3	2.6
아일랜드	2.8	1.1	0.1	-	5.1	6.2	3.6	-
그리스	0.7	0.3	0.7	-0.2	-0.4	0.4	1.6	1.7
스페인	0.3	0.5	0.5	0.7	0.7	1.3	1.6	2.0
프랑스	0.0	-0.1	0.3	0.1	0.8	0.0	0.4	0.2
크로아티아	0.1	-0.2	0.0	-	-0.4	-1.0	-0.6	-
이탈리아	0.0	-0.2	-0.1	0.0	-0.3	-0.4	-0.4	-0.3
키프로스	-0.5	-0.4	-0.3	-0.7	-3.5	-2.1	-1.8	-1.9
라트비아	0.2	0.8	0.5	0.4	2.3	3.3	2.3	1.9
리투아니아	0.5	0.9	0.4	0.6	3.4	3.3	2.7	2.4
룩셈부르크	1.0	0.5	2.3	-	2.5	1.3	3.8	-
헝가리	1.0	0.9	0.5	0.9	3.6	3.8	3.3	3.4
몰타	0.9	1.3	0.8	-	3.5	3.1	4.0	-
네덜란드 ²⁾	-0.3	0.6	0.2	0.5	0.0	1.1	1.0	1.0
오스트리아 ³⁾	0.0	0.0	-0.1	0.1	0.8	0.5	0.2	0.0
폴란드	1.0	0.6	0.8	0.6	3.5	3.3	3.3	3.1
포르투갈	-0.4	0.3	0.3	0.5	1.0	0.9	1.1	0.7
루마니아	0.3	-0.4	2.2	0.5	4.0	2.0	3.2	2.5
슬로베니아	0.1	1.1	0.7	-	1.9	2.8	3.1	-
슬로바키아	0.6	0.6	0.6	0.6	2.3	2.4	2.5	2.4
핀란드	-0.4	0.4	0.2	-0.3	-0.2	0.1	0.0	-0.1
스웨덴	0.2	0.5	0.3	-	1.6	2.4	2.1	-
영국	0.6	0.8	0.7	0.5	2.4	2.6	2.6	2.7
EA18	0.3	0.1	0.2	0.3	1.1	0.8	0.8	0.9
EA19	0.3	0.1	0.2	0.3	1.1	0.8	0.8	0.9
EU28	0.4	0.2	0.3	0.4	1.5	1.3	1.3	1.3

주: 1) The seasonal adjustment does not include a working-day correction for Ireland, Romania and Slovakia, Iceland.

2) Percentage change compared with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working-day adjusted data.

3) The Austr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in its domestic publication uses the trend cycle growth rate. Quarterly national accounts data in unadjusted and seasonally adjusted format are published by Statistics Austria 2 months after the reference period.

자료: EU 통계청, Flash estimate for the fourth quarter of 2014, 2015.

* 개혁안의 내용은 [부록 1] 구제금융 관련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 주요 내용 참고

- (평가) 또한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개혁안이 충분히 포괄적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유효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향후 일정) 최종 승인을 위해 회원국별 의회의 승인이 필요

■ EU 통계청(Eurostat), 2014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5.2.13.)⁷⁾

- 2014년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유로존(EA18)은 0.3% 증가, EU 28개국은 0.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유로존(EA18)이 0.9%, EU 28개국은 1.3% 증가(잠정치 기준)⁸⁾
- 주요 국가별로 전분기 대비 2014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영국(+0.5%), 프랑스(+0.1%), 독일 · 스페인(+0.7%), 그리스(-0.2%) 등으로 나타남
- * 미국의 2014년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해란 연구원)



■ IMF 협의단, 2015년 한국에 대한 연례 평가(2015 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발표(2014.2.13.)⁹⁾

- (경제상황) 2014년 한국의 성장동력은 다소 주춤했으며, 현재 전년 대비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자체 보다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중요
- (대내적)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며,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외 불확실성은 증가한 상황

- ☞ 구조적 · 장기적 관점의 도전요소로 비제조업 분야의 낮은 생산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을 지적
- (대외적) 한국은 원유 수입국으로 저유가의 수혜를 받을 것은 분명하나 유가하락이 투자 및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
 - ☞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 EU, 일본의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리스크 또한 증가
- (부정적 요인) 자기 강화적 하방 다이내믹(self-reinforcing downside dynamic)이 확산될 가능성
 - 인구 고령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수준이 회복되지 못해 소비 위축이 지속될 위험
 -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할 경우 IMF 전망의 기본전망(baseline scenario)에서 가정하는 꾸준한 경제회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가능성
- (긍정적 요인)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자본도 견고(낮은 수준의 단기 대외차입금, 순외화자산 포지션 증가, 풍부한 외환 보유고)
 -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가계자산(financial assets) 증가로 연결
 - 모기지 시장이 보다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도모

7)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web/products-press-releases/-/2-13022015-AP>

8) 확정치는 2015년 3월 6일 발표될 예정

9) 자료: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55.htm>



할 필요

- (정책적 제언)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도전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
 -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도출(consensus-building)이 꾸준히 필요
 - 한국은 공공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된 상황

■ IMF, 우크라이나에 약 175억달러 지원 합의(2014.2.12.)¹⁰⁾

- (프로그램 목표)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 견고한 중기 경제성장 추진을 목적으로 정책조정 및 개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적 지원을 강화
- (프로그램 내용) 즉각적인 거시경제 안정화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구조개혁을 시행
 - 임금 및 연금을 동결하는 동시에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조세 간소화 및 과세기반 확대를 달성,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재정 건전화정책 지속
 - 변동환율제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증가한 인플레이션률을 정상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와 함께 구조조정 실시
 - 국영에너지기업(Naftogaz)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독립성을 강화
 - 규제 완화, 반(反)부패 의제 등 경제 구조개혁을

실시. 탈독점화를 위해 국영 기업 개혁 시행

- (지원내용) 기존 대기성 차관(SBA; Stand-By Arrangement)지원¹¹⁾을 대체하여 향후 4년간 확대 신용공여(EFF; Extended Fund Facility) 형태로 123.5억 특별인출권(SDR)(약 175억 달러)을 지원
- (향후 일정) 구제금융 방안은 이달 말까지 IMF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OECD

■ 2014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 발표(2015.2.19.)¹²⁾

- OECD 국가의 2014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p 낮은 0.5%를 기록
 - 201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1.9%를 기록하여 2013년(1.4%)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미국(1.2% → 0.7%)과 영국(0.7% → 0.5%)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감소한 데 비해, 일본(-0.6% → 0.6%)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강한 회복세를 보임
 - 독일(0.1% → 0.7%)은 성장률이 큰 폭 상승한 반면 프랑스(0.3% → 0.1%)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이탈리아(-0.1% → 0.0%)는 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EU(0.3% → 0.4%) 및 유로지역(0.2% → 0.3%)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
 - OECD 국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8%이

10) 자료: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51.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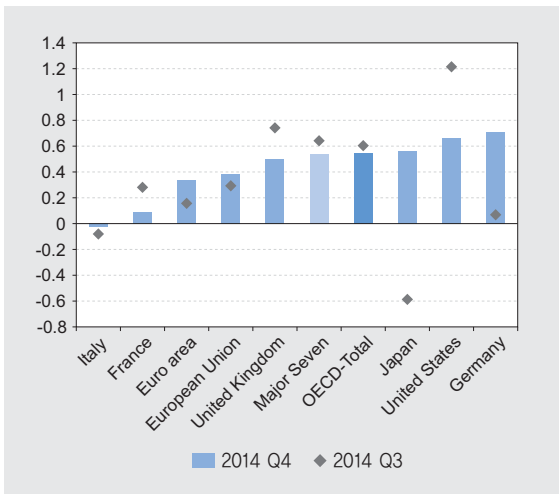
11) 2014년 5월 제2호 「재정동향」 참고

12) <http://www.oecd.org/std/na/QNA-GDP-Growth-Q414-Eng.pdf>

며 주요 7개국 중 영국(2.7%)과 미국(2.5%)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탈리아(-0.3%)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그림 1] G20 국가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



주: 실질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을 거침

자료: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표 2>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

	2012	2013				2014			
	Q4	Q1	Q2	Q3	Q4	Q1	Q2	Q3	Q4
OECD-Total	0.0	0.5	0.5	0.7	0.5	0.2	0.4	0.6	0.5
G20	0.6	0.8	0.9	1.0	0.8	0.7	0.8	0.9	..
European Union	-0.4	-0.1	0.4	0.3	0.4	0.4	0.2	0.3	0.4
Euro area	-0.4	-0.4	0.3	0.2	0.2	0.3	0.1	0.2	0.3
Major Seven	-0.1	0.5	0.5	0.7	0.5	0.1	0.4	0.6	0.5
Canada	0.2	0.8	0.5	0.7	0.7	0.3	0.9	-0.7	..
France	-0.2	0.0	0.7	-0.1	0.3	0.0	-0.1	0.3	0.1
Germany	-0.4	-0.4	0.8	0.3	0.4	0.8	-0.1	0.1	0.7
Italy	-0.8	-0.9	-0.2	0.0	-0.1	0.0	-0.2	-0.1	0.0
Japan	-0.2	1.4	0.8	0.4	-0.4	1.3	-1.7	-0.6	0.6
United Kingdom	-0.3	0.6	0.5	0.7	0.4	0.6	0.8	0.7	0.5
United States	0.0	0.7	0.4	1.1	0.9	-0.5	1.1	1.2	0.7

자료: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표 3>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

	2012	2013				2014			
	Q4	Q1	Q2	Q3	Q4	Q1	Q2	Q3	Q4
OECD-Total	0.7	0.8	1.1	1.6	2.1	1.9	1.9	1.8	1.8
G20	2.6	2.7	2.9	3.2	3.5	3.4	3.3	3.2	..
European Union	-0.7	-0.7	-0.1	0.2	0.9	1.5	1.3	1.3	1.3
Euro area	-0.9	-1.2	-0.6	-0.3	0.4	1.1	0.8	0.8	0.9
Major Seven	0.7	0.8	1.2	1.6	2.3	1.8	1.7	1.6	1.6
Canada	1.0	1.6	1.6	2.1	2.7	2.1	2.5	2.6	..
France	0.0	-0.2	0.7	0.3	0.8	0.8	0.0	0.4	0.2
Germany	0.1	-0.6	0.1	0.3	1.1	2.3	1.4	1.2	1.5
Italy	-2.5	-2.5	-2.2	-1.8	-1.2	-0.3	-0.4	-0.4	-0.3
Japan	0.0	0.3	1.5	2.4	2.2	2.2	-0.4	-1.3	-0.4
United Kingdom	0.4	0.9	1.7	1.6	2.4	2.4	2.6	2.6	2.7
United States	1.6	1.7	1.8	2.3	3.1	1.9	2.6	2.7	2.5

자료: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FY2014-15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C) 하원 상정(2015.2.19.)^{13) 14)}
 - 추경안(C)에서는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18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13억 캐나다달러로 편성
 - 세출예산안(Main Estimates)과 추경(A), (B), (C)를 포함한 FY2014-15 의결지출 합계액은 총 863억 캐나다달러
 - ☞ 캐나다 정부의 비용절감으로 추경예산 합계액은 최근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
 - FY2014-15 의결지출은 FY2013-14 대비 약 85억캐나다달러 감소
 - 주요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은 퇴직급여 지급에 4억캐나다달러, 학생용자 대출 등을 포함한 고용 및 사회발전에 2억 9,000캐나다달러, 군 관련 지원금 약 2억캐나다달러 등으로 편성

〈표 4〉 FY2014-15 추경예산안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일반예산 (Budgetary)	투융자예산 (Non-Budgetary)
추경 (A)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24	0.4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0.1	0
	합계	24.1	0.4
추경 (B)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29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3	0
	합계	32	0
추경 (C)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18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13	2
	합계	5	2

자료: 캐나다 재무위원회, Supplementary Estimates(C)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프랑스

1. 기타

- 2014년 4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 발표(2015.2.13.)¹⁵⁾
 - 2014년 4분기 GDP성장률은 0.1%이며, 2014년 연간 GDP성장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과 대외무역은 전분기보다 성장하여 GDP 기여도는 각각 +0.1%p씩을 기록
 - 반면, 재고투자는 전분기보다 부진하여 GDP 기여도는 -0.2%p를 기록

13) 자료: 캐나다 재무위원회, Supplementary Estimates(C), <http://www.tbs-sct.gc.ca/ems-sgd/sups/c/20142015/sec-bsdc-eng.pdf>

14) 추경(A)와 추경(B)는 『2014년 상반기 재정동향』, 11월 제2호 내용 참고

15)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26>

〈표 5〉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4 Q1	2014 Q2	2014 Q3	2014 Q4	2013 연간실적	2014 연간전망
GDP성장률	0.0	-0.1	0.3	0.1	0.4	0.4
가계소비	-0.3	0.4	0.3	0.2	0.3	0.6
정부소비	0.3	0.4	0.6	0.4	2.0	1.9
총고정자본형성(GFCF)	-0.7	-0.8	-0.6	-0.5	-0.8	-1.6
수출	0.6	0.1	0.7	2.3	2.4	2.7
수입	1.0	0.6	1.3	1.7	1.9	3.8
GDP 기여도	국내수요	-0.2	0.1	0.2	0.4	0.4
	재고투자	0.3	-0.1	0.3	-0.2	0.3
	대외무역	-0.1	-0.2	-0.2	0.1	0.1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15.2.13.

- 스위스프랑 환율의 상승으로 지방정부 지원기금(Support Fund) 두 배 증액(2015.2.24.)¹⁶⁾
 - 프랑스 지방정부는 최근 스위스프랑 환율 폭등¹⁷⁾으로 유로-스위스프랑 환율 기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상승하여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함
 -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4년에 설립된 지방정부 지원기금을 향후 15년 동안 15억유로를 추가 증액하여 총 30억유로로 확대하며, 지원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터 연구원)

독일

1. 기타

- 연방은행, 2014년 경제성장률 1.6%로 예상보다 상향 발표(2015.2.16.)¹⁸⁾
 - 2014년 4사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를 기록하면서 연말 두드러진 경기 반등으로 연방은행과 경제에너지부의 추정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 2014년 경제성장률을 연방은행은 1.4%로(2014.12월 월간보고서), 경제에너지부는 1.5%로(2015.1월 경제전망보고서) 추정한 바 있음
 - 연방은행은 경기회전의 원인을 유가급락, 유로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출증가와 국내수요 상승에 있다고

16)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economie/emprunts-structures-fonds-soutien-aux-collectivites-locales-porte-a-3-milliards>

17) 15.1.15에 스위스 중앙은행은 1유로당 1.2스위스프랑으로 설정한 최저환율제를 폐지하여 스위스프랑 환율이 상승

18) 연방은행, Topics 2015.2.16

http://www.bundesbank.de/Redaktion/EN/Topics/2015/2015_02_16_monthly_report_february.html?startpageId=Startseite-EN&startpageAreal=Teaserbereich&startpageLinkName=2015_02_16_monthly_report_february+329894



분석하고, 이러한 상승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표 6〉 실질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연도	전년 대비	분기	전분기 대비
2013	0.2	Q1	-0.4
		Q2	0.8
		Q3	0.3
		Q4	0.4
2014	1.6	Q1	0.8
		Q2	-0.1
		Q3	0.1
		Q4	0.7

자료: 통계청, Press release 2015.2.13.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표 7〉 이탈리아 분기별 실질GDP

(단위: 백만유로, %)

	GDP (2010년기준)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1- I	404,923	0.2	1.9
2011- II	405,589	0.2	1.3
2011- III	404,274	-0.3	0.5
2011- IV	400,916	-0.8	-0.7
2012- I	397,418	-0.9	-1.9
2012- II	395,775	-0.4	-2.4
2012- III	394,132	-0.4	-2.5
2012- IV	391,025	-0.8	-2.5
2013- I	387,617	-0.9	-2.5
2013- II	386,951	-0.2	-2.2
2013- III	386,891	0.0	-1.8
2013- IV	386,479	-0.1	-1.2
2014- I	386,402	0.0	-0.3
2014- II	385,541	-0.2	-0.4
2014- III	385,263	-0.1	-0.4
2014- IV	385,191	0.0	-0.3

주: seasonally and calendar adjusted, chain-linked volumes with reference year 2010.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이탈리아

1. 기타

- 이탈리아 통계청, 2014년 4분기 실질GDP 잠정치 발표(2015.2.13.)¹⁹⁾
 - 2014년 4분기 실질 GDP 잠정치는 직전분기와 동일했고,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 농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내수 부진이 순수출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함

- 경제재정부, 최근 이탈리아의 국가채무에 대한 보고서²⁰⁾(Relevant factors influencing recent debt developments in Italy) 발표²¹⁾ (2015.2.21.)
 - 이탈리아는 전례 없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만,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하지만 경제전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국가채무 감축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함
 - 이탈리아는 추가적인 재정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

19) 이탈리아 통계청, <http://www.istat.it/it/archivio/144681>

20)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정책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이탈리아 정부에 요구했고, 이 보고서는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21) 이탈리아 경제재정부(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Bilancio 2015: i documenti per l'opinione della Commissione Europea

- 만, 이는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3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GDP 대비 43%로 유로지역 평균보다 18%p 낮은 것은 긍정적인 요인
 -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다년도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이는 성장과 장기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노동시장 개혁, 행정 효율성 강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개혁,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개발, 은행시스템 강화, 세제 간소화, 탈세와의 전쟁, 교육시스템 개혁 등을 시행 중
 - 노령화 관련 지출 개혁이 이미 이루어져, 유럽 국가 중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표 8〉 분기별 실질성장률(계절조정계열)

(단위: 전기 대비, %)

항목	2013년	2014년				2014년 (연율환산)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0~12월
국내총생산	△0.4	1.3	△1.7	△0.6	0.6	2.2
국내수요	0.2	1.6	△2.7	△0.6	0.3	1.3
민간수요	0.1	2.4	△3.7	△1.0	0.4	1.6
공적수요	0.4	△0.7	0.5	0.6	0.1	0.4
재화·서비스 순수출 ¹⁾	△0.5	△0.3	1.1	0.1	0.2	-

주: 1) 실질성장률 대비 기여도

자료: 내각부, 「四半期別GDP速報(2014(平成26)年10-12月期・1次速報)」, 2015.2.16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 일본

1. 기타

- 내각부, 2014년 10~12월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15.2.16.)
- 2014년 10~12월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연율환산 2.2%)로 3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 명목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연율환산 4.5%) 기록
 - 실질GDP 증가율의 플러스 전환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에 기인

🇬🇧 영국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봄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2014-15)에서 본세출예산 대비 259억파운드 감소한 5,455억파운드로 추경예산을 편성(2015.2.19.)²²⁾
 -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19.6억파운드가 증가한 3,123억파운드
 - 연간관리지출(AME)은 324억파운드 감소한 1,689억파운드
 - 총순현금소요액은 현금주의조정 증가로 4,811억파운드로 증액(본예산 대비 105억파운드 증가)

22)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pplementary-estimates-2014-15>



〈표 9〉 FY2014-15 추가경정예산

(단위: 백만파운드)

	2014-15 예산(A)	2014-15 추경안(B)	증감(B-A)
부처별 지출한도(DEL)	310,386	312,346	1,960
자원 DEL	268,470	270,891	2,420
자본 DEL	41,916	41,455	-460
연간관리지출(AME)	201,402	168,972	-32,430
자원 AME	186,060	160,364	-25,696
자본 AME	15,342	8,607	-6,734
총순예산(Total Net Budget)	511,788	481,318	-30,470
자원 순예산	454,531	431,256	-23,275
자본 순예산	57,257	50,063	-7,195
총비예산 지출 (Total Non-Budget Expenditure)	59,684	64,188	4,504
총지출 (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571,472	545,506	-25,966
현금주의 조정 (Resource to cash adjustments)	-100,856	-64,324	36,531
총순현금소요액 (Total Net Cash Requirement)	470,617	481,182	10,565

자료: 영국 재무부, *Supplementary Estimates and New Estimates 2014-15*, Table 2 발췌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부록 1

구제금융 관련 그리스 정부의 개혁안
주요 내용(2015.2.24.)²³⁾

-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연장과 관련해 조세정책 개혁, 부정부패 척결, 공공부문 개선 등을 담은 개혁안을 유로그룹에 제출
 - (재정 구조 개혁(Fiscal structural policies))
 - (조세정책) 탈세 방지 강화, VAT 제도 개선, 부유층 등 모든 사회 계층에 대한 납세 순응 환경 조성 등
 - (공공지출) 중앙 및 지방 정부 효율성 개선, 모든 부처의 지출 검토를 통한 경비 절감책 마련, 의료지출 통제 및 의료 서비스 개선 등
 - (사회보장) 연금 시스템 현대화, 과도한 조기 퇴직을 야기하는 인센티브 제거 등
 - (행정 및 부패) 부패 척결, 에너지·담배 밀수 및 자금 세탁 방지 등
 - 금융 안정
 - (Installment schemes) 미납 세금 징수 강화, 저소득층 소액 채무자에 대한 처벌 면제 등
 - (은행 융자 및 부실채권) 저소득자 거주 주택의 경매 제한, 취약 가계 지원 대책, 파산법 개정 등
 - 성장을 위한 정책
 - (민영화 및 공공자산 관리) 완료된 민영화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고, 정부의 장기 편익 극대화를 위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

23) 참고: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2/24/us-eurozone-greece-text-idUSKBN0LS0V520150224>



- (노동시장 개혁) 실업자 고용 증진 제도 개선·확대, 공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단체 임금 협상 방식 단계적 도입 등
- (생산시장 개혁 및 기업 환경 개선) 경쟁력을 해치는 장벽 제거, 가스 및 전기 시장 규제를 EU 기준에 맞게 조정,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등
- (사법 시스템 개혁) 법원 조직 개선, 전자 사법 시스템 등
- (통계) 그리스 통계청의 제도적 독립성 유지
- 인도주의 측면의 위기(Humanitarian Crisis) 대응
 - 푸드 스탬프 등을 통한 절대 빈곤 해소 정책, 최저임금제도 평가 등
 - 이와 같은 인도주의 측면의 위기 대응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정책흐름

- 2015년 2월 고용동향
- 2014년 국민연금, 375만명에게 13조 8천억원 지급
-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실시
-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 한-UAE 관세청, 세관협정 체결로 對UAE 수출기업지원 강화
-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지원 사업 본격 실시
-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 박차

2015년 2월 고용동향

* 본 자료는 2015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서 공동 발표한 「15.2월 고용동향(취업자 37.6만명 증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저효과 심화(14.1월 70.5 → 2월 83.5만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6만명 증가하며 전월보다 증가폭 확대

*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원계열, 만명): ('14.10)40.6 (11월)43.8 (12월)42.2 ('15.1)34.7 (2월)37.6

* 취업자 증감(전월비, 계절조정, 만명): ('14.10)△2.4 (11월)9.6 (12월)1.7 ('15.1)7.6 (2월)12.7

• 전월비로도 고용증가 모멘텀이 강화('15.1월 7.6만명 → 2월 12.7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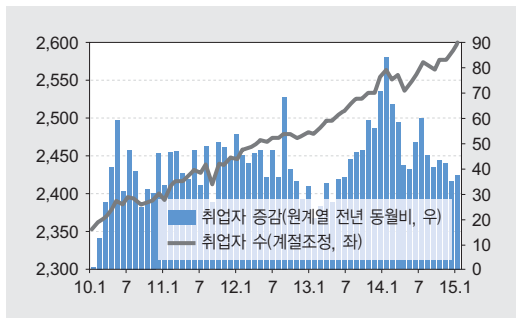
◇ 15~64세 고용률(64.9%)은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실업률(4.6%)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

* 15~64세 고용률(%, 원계열): ('14.10)65.7 (11월)65.9 (12월)65.3 ('15.1)64.8 (2월)64.9

* 15~64세 고용률(%, 계절조정): ('14.10)65.4 (11월)65.5 (12월)65.7 ('15.1)66.0 (2월)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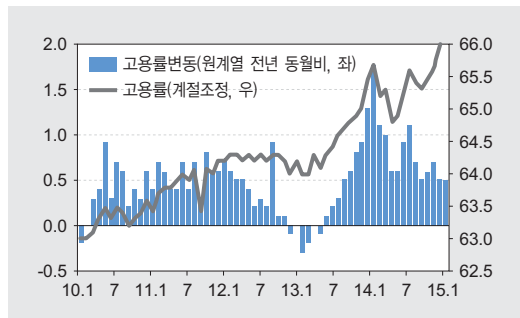
월별 취업자 증감

(단위: 만명)



고용률 추이(15~64세 기준)

(단위: 만명)



◇ 향후 기저효과가 완화되면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도출 노력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제1차 국가통계

① (취업자 증감) 취업자(2,519.5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37.6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40.6 (11월)43.8 (12월)42.2 ('15.1)34.7 (2월)37.6
 <민간(공공행정 제외)> ('14.10)45.7 (11월)48.1 (12월)47.6 ('15.1)39.8 (2월)44.8

② (고용률) 15~64세 고용률(64.9%)은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 15~64세 고용률(%, 원계열): ('14.10)65.7 (11월)65.9 (12월)65.3 ('15.1)64.8 (2월)64.9
 - 전년 동월비(%p): ('14.10)0.5 (11월)0.6 (12월)0.7 ('15.1)0.5 (2월)0.5
 * 15~64세 고용률(%, 계절조정): ('14.10)65.4 (11월)65.5 (12월)65.7 ('15.1)66.0 (2월)66.1

•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58.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

* 고용률(%): ('14.10)60.9 (11월)60.8 (12월)59.4 ('15.1)58.7 (2월)58.8
 - 전년 동월비(%p): ('14.10)0.4 (11월)0.4 (12월)0.3 ('15.1)0.2 (2월)0.2

③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40.1만명 증가, 경제활동참가율(61.6%)은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14.10)62.9 (11월)62.7 (12월)61.5 ('15.1)61.0 (2월)61.6
 - 전년 동월비(%p): ('14.10)0.7 (11월)0.6 (12월)0.6 ('15.1)0.4 (2월)0.2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8.3만명 증가 - 활동 상태별로는 가사(△8.7만명), 재학·수강(△14.2만명)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14.3만명), 육아(2.4만명) 등에서 증가

④ (실업률) 실업자(120.3만명)가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4.6%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

* 실업자(만명): ('14.2)117.8 (10월)85.8 (11월)81.8 (12월)88.6 ('15.1)98.8 (2월)120.3
 - 전년 동월비(만명): ('14.2)18.9 (10월)13.5 (11월)11.8 (12월)11.3 ('15.1)9.7 (2월)2.4
 * 실업률(%): ('14.2)4.5 (10월)3.2 (11월)3.1 (12월)3.4 ('15.1)3.8 (2월)4.6
 - 전년 동월비(%p): ('14.2)0.5 (10월)0.4 (11월)0.4 (12월)0.4 ('15.1)0.3 (2월)0.1
 * 청년 실업률(%): ('14.2)10.9 (10월)8.0 (11월)7.9 (12월)9.0 ('15.1)9.2 (2월)11.1

2) 취업자 동향

① (산업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지속 주도

- 제조업은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며 15.9만명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14.2 (11월)10.2 (12월)14.2 ('15.1)14.1 (2월)15.9
-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지속되며 23.1만명 증가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37.2 (11월)34.5 (12월)29.2 ('15.1)24.2 (2월)23.1
 - 보건·복지(+13.5만명), 음식·숙박(+8.1만명), 도소매(+6.2만명) 등에서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금융보험(△6.8만명), 공공행정(△7.1만명) 등에서 감소
- 건설업은 보험세를 보인 가운데 농림어업은 감소 폭 축소
 * 건설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4.7 (11월)8.4 (12월)8.3 ('15.1)7.0 (2월)6.8
 *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14.6 (11월)△8.5 (12월)△9.4 ('15.1)△10.4 (2월)△8.7

②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은 증가세 둔화, 자영업자

는 감소 지속

- 상용직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반면, 임시일용직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

* 상용직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36.1 (11월)33.2 (12월)37.2 ('15.1)35.3 (2월)38.3

임시일용직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9.6 (11월)17.7 (12월)9.1 ('15.1)10.5 (2월)8.2

- 자영업자는 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세가 소폭 둔화

* 자영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1.7 (11월)0.9 (12월)△0.6 ('15.1)△6.8 (2월)△5.9

무급가족종사자전년 동월비, 만명: ('14.10)△6.8 (11월)△7.9 (12월)△3.6 ('15.1)△4.3 (2월)△3.0

3) 연령별 동향

- ① **(취업자 증감)** 연령대 이동 요인 등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청년층도 고용증가세 지속
- 인구가 감소한 10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증가

연령별 취업자 증감

(단위: 전년 동월 대비, 만명)

	전체	15~29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1월	34.7	2.7	0.1	2.6	△1.7	△2.7	19.1	17.4
'15.2월	37.6	3.0	△1.4	4.4	1.8	△4.8	18.3	19.3

- ② **(고용률)** 10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

- 청년층(15~29세)의 경우 20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면서 고용률(41.1%)이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 2월 청년 고용률 증감(전년 동월 대비, %p): (10대)△0.2, (20대)+0.3

** 청년 고용률(%): ('14.10)40.6 (11월)40.8 (12월)40.6 ('15.1)41.3

(2월)41.1

- 전년 동월비(%p): ('14.10)1.1 (11월)0.8 (12월)0.7 ('15.1)0.5 (2월)0.5

- 30대는 큰 폭의 인구감소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소폭 증가하며 고용률(74.0%)이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

* 30대 인구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10.2 (11월)△9.9 (12월)△9.6 ('15.1)△9.4 (2월)△9.2

'15.2월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p)

	15~29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고용률	41.1	8.5	57.2	74.0	78.0	73.3	34.4
- 전년 동월비	0.5	△0.2	0.3	1.1	△0.4	0.5	0.5

4) 고용보조지표

- 고용보조지표1은 6.4%, 보조지표2는 10.8%, 보조지표3은 12.5%

* 고용보조지표1=(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100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100

II. 평가와 전망

- ① 기저효과 심화('14.1월 70.5 → 2월 83.5만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6만명 증가하며 전월보다 증가폭 확대

*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원계열, 만명): ('14.10)40.6 (11월)43.8 (12월)42.2 ('15.1)34.7 (2월)37.6

- 전월비로도 고용증가 모멘텀이 강화(15.1월 7.6 → 2월 12.7만명)

* 취업자 증감(전월비, 계절조정, 만명): ('14.10)△2.4 (11월)9.6

(12월)1.7 ('15.1)7.6 (2월)12.7

-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설 특수 등으로 음식·숙박업 등의 취업자 증가폭 확대

*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14.8 (11월)7.7 (12월)12.1 ('15.1)7.9 (2월)8.1

- 농림어업, 금융보험은 고령화,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 지속

*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14.6 (11월)△8.5 (12월)△9.4 ('15.1)△10.4 (2월)△8.7
 금융보험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4.4 (11월)△3.8 (12월)△5.2 ('15.1)△6.5 (2월)△6.8

② 경활참가율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경활참가율 증감(전년 동월비, %p): ('14.10)0.7 (11월)0.6 (12월)0.6 ('15.1)0.4 (2월)0.2

* 실업률(%): ('14.2)4.5 (9월)3.2 (10월)3.2 (11월)3.1 (12월)3.4 ('15.1)3.8 (2월)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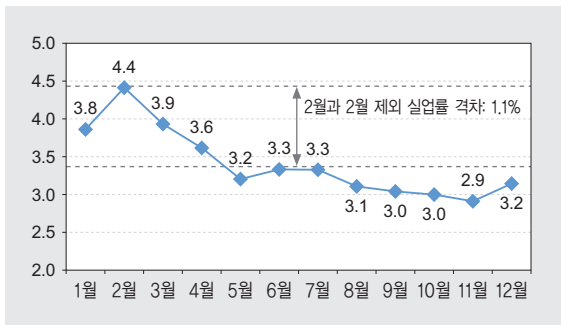
- 실업률 전월비 상승은 통상 2월이 방학, 취업시즌 등 계절적 특성으로 다른 달에 비해 평균 1.1%p 이상 높은 데 주로 기인

* 평균실업률(원계열, '10~'14년, %): (2월)4.4 (2월 제외)3.3

- 고용보조지표 상승도 계절요인에 따른 실업률 상승에 주로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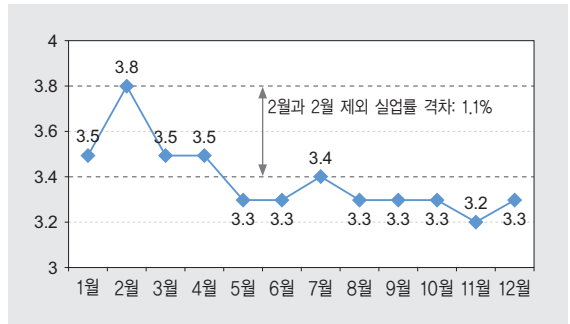
월평균 실업률(원계열, '10년~'14년)

(단위: %)



월평균 실업률(계절조정, '10년~'14년)

(단위: %)



③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7.7 (11월)4.9 (12월)4.1 ('15.1)2.7 (2월)3.0

청년(15~29세) 고용률(%): ('14.2)40.6 (11월)40.8 (12월)40.6 ('15.1)41.3 (2월)41.1

- 높은 청년실업률은 70%대의 대학 진학률*, 취업 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에 주로 기인

* 대학진학률 현황('12년, OECD, %): (한국)69 (獨)53 (佛)41 (日)52 (OECD)58

- 특히, 경직적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이 청년고용을 저해하고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정규직-비정규직(임시직) 고용보호 격차가 클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경향

⇒ 유럽 임시직 보호도 1(1~6) 증가 시 청년실업률 2.5~5%p 하락(IMF, '14.12)

- 여성은 20만명대의 양호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1월 대비로는 0.2%p 상승)

* 여성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20.3 (11월)23.8 (12월)23.8 ('15.1)23.5 (2월)23.2

여성 고용률(%): ('14.2)47.6 (10월)50.4 (11월)50.3 (12월)48.6 ('15.1)48.0 (2월)48.2

④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에 임시일용직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

* 상용직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36.1 (11월)33.2 (12월)37.2 ('15.1)35.3 (2월)38.3

임시일용직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9.6 (11월)17.7 (12월)9.1 ('15.1)10.5 (2월)8.2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감소세 지속

* 자영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1.7 (11월)0.9 (12월)△0.6 ('15.1)△6.8 (2월)△5.9

⑤ 향후 기저효과가 완화되면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노력
 - 특히, 非정규직 차별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교육 개혁 등을 통해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필요

별첨 청년 실업률 관련 설명자료

1. 가계 금융부문

① 청년층의 경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3.9월 이후 1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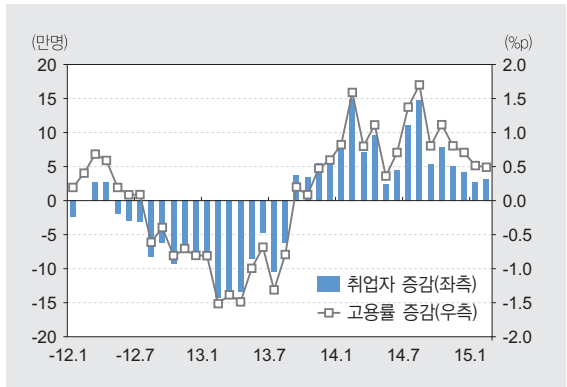
-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며 고용증가세 지속 → 고용률 상승

* 청년 취업자 증감(전년 동월비, 만명): ('14.10)7.7 (11월)4.9 (12월)4.1 ('15.1)2.7 (2월)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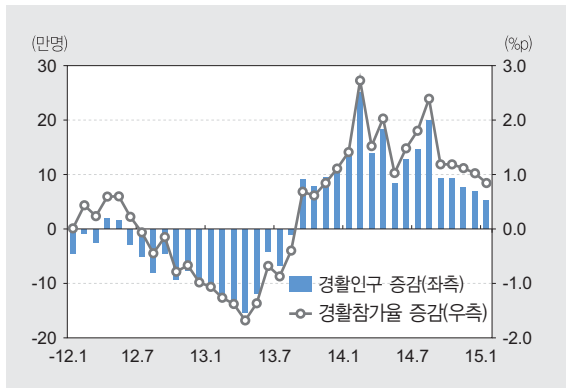
청년(15~29세) 고용률(%): ('14.2)40.6 (11월)40.8 (12월)40.6 ('15.1)41.3 (2월)41.1

- 완만한 경기개선에 따른 구직기대감 증가, 방학을 이용한 취업경험 등으로 경찰인구가 증가 → 경찰참가율 상승

청년층 취업자·고용률 증감



청년층 경찰인구·경찰참가율 증감



②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취업자 증가와 더불어 실업률도 함께 상승

- 전월비 상승은 통상 2월이 방학, 취업시즌 등 계절적 특성으로 실업률이 다른 달에 비해 평균 1.5%p 이상 높은 데 주로 기인

* 청년층 평균실업률(원계열, '10~'14년, %): (2월)9.4 (2월 제외)7.9

③ 높은 청년실업률은 70%대의 대학 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에 주로 기인

* 대학진학률 현황('12년, OECD, %): (한국)69 (獨)53 (佛)41

(E)52 (OECD)58

- 특히, 경직적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이 청년고용을 저해하고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정규직-비정규직(임시직) 고용보호 격차가 클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경향

⇒ 유럽 임시직 보호도 1(1~6) 증가 시 청년실업률 2.5~5%p 하락(IMF, '14.12)

⇒ 노동, 교육부문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2. 향후 추진계획

◇ 청년층 취업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결책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반드시 성공시켜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창조경제 활성화 등 산업의 활력도 제고
- 일학습병행제 확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청년층 조기취업 촉진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과도한 임금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및 정년연장,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통상임금·근로시간 관련 불확실성 해소, 사회안전망 정비 등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가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소득분배 개선 → 경제활력 제고'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우리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

• 3월 우선과제(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사회안전망 정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 결집

* '14.12.23. 노사정 기본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방향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5대 의제(아래) 및 14개 세부과제 확정

↳ ① 노동시장 이중구조(우선), ②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우선), ③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④ 사회안전망 정비(우선), ⑤ 법·제도 개선-정책연계 강화 등

• 아울러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업, 창조경제 관련 산업분야 활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흡수 여력 확대

② 일·학습 병행의 재학생 단계 확대 및 추진 가속화

• 특성화고·전문대·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확산

* ▲ 고교단계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구축(9개교) ▲ 대학형 일학습병행제 시범 도입(26개교) ▲ 도제특구 및 도제지원센터 운영(8개 구역) ▲ 대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중소상생형 일학습병행제 확산(20개) 등

• 일학습병행제 선정 기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조기 개발 등을 통해 실제 학습근로자 채용·훈련 독려

* '15.2월 현재 참여기업 2,115개사 중 925개사에 3,999명이 학습근로자로 채용됨. 미 채용중인 기업의 학습프로그램을 신속히 개발하여 채용 예정인 7,675명의 조기 채용 독려

• 사회적 파급력 높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참여를 위한 설명회·간담회 실시('15년 상반기)를 통해 참여기업 집중 발굴

* 중앙·지역단위 전문지원기관(경총, 중견연 등), 듀얼 공동훈련센터 등 활용

③ 지역맞춤형 일자리 제공

• 자치단체와 지역의 비영리단체간 컨소시엄으로 지역 내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일자리 제공사업 조기 착수(144억원, 3월~)

* 예: 지식·문화 서비스일자리 창출(대구), VJ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제주)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 추진(3월~)

* 예: 광역 취업알선, 산단 고용환경개선 공동 노력, 산업기능요원 매칭 강화

◇ 능력중심 채용을 확산하고, 재학 단계부터 체계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스펙 쌓기 문제 해결

◇ 일자리 정보의 접근성 제고, 강소기업 매칭 강화 등을 통해 청년의 구직기간 단축 추진

4 사업주단체 교육계, 정부 등이 협력하여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 100개 공공기관을 선정, NCS 기반 채용을 위한 컨설팅 시행 및 채용 추진(3월~)

* '14년 컨설팅을 받은 30개 공공기관은 금년 중 직무능력중심 채용진행

- '능력중심 취업준비 매뉴얼' 마련 및 포스터·리플렛 등 제작, 각 학교 및 취업지원관 등을 통해 청년 대상 홍보(3월~)

- 취업준비생이 공공기관의 능력중심채용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능력중심 채용설명회를 개최(3월~)

5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를 설계하여 목표한 직무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 대학의 진로지도·취업지원 역량강화 방안 마련·시행('15년 상반기)

6 청년-기업 간 매칭 강화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강소기업 빈 일자리 매칭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에서 졸업·취업 시준동안 강소기업 대상 특별구인발굴기간(2.23~3.31)을 운영하여 일자리 발굴 강화

- 고용센터-지역대학 간 협업을 통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채용박람회 등 집중 취업알선
- 강소기업 고용창출지원사업 및 청년인턴제 참여 우대 등 재정·금융지원 등 확대(1월~)

* (중전) 채용지원서비스제공,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점 등 9가지 혜택 → (개선) 고용창출지원사업 선정, 산재에 방지설 자금 지원 우대 등 20가지 혜택

- 산업부·중기청과 협업, 우수기업 현장정보 공유 및 모바일 등 청년친화적 매체를 활용, 강소기업 정보 접근성 강화

* 카카오톡 플러스, 내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내가 원하는 맞춤정보를 설정하고 검색하는 '자동검색 Go Go', 관심기업설정·찜하기 등

* 지역 강소기업 정보 최우선 검색 시스템 도입(GPS 활용)

- 지자체·경제단체·학교 등과 연계, 으뜸 강소기업 선정(격월) 등 강소기업 바로알기 캠페인 추진

- 취업성공패키지 II를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조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3월~, 학교·자치단체·민간위탁기관과 협업)

* 대학생의 경우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

* 청년층 지원 목표 상향: '14년 68천명 → '15년 102천명

7 주요기업 채용계획 조사 및 정보제공

-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기업(30대 대기업 우선 실시)의 채용계획 등을 조사, 워크넷·청년포털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 최근 기업들의 변화된 채용 경향을 분석하여 청년층에 제공, 취업·진로지도에 활용('15년 상반기)

* 기업규모 · 업종 · 직군별 채용경향을 분석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객관적 ·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에도 활용

- ◇ 청년고용정책 T/F를 구성 · 운영하여 기 발표된 정책의 점검 · 보완을 가속화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이고,
 - 인문계 대졸자 대책, 열정페이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 ◇ 청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채널의 홍보계획을 수립, 정책 활용도 · 체감도 제고

8 청년고용정책 T/F 구성 · 운영

- 그간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성과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정책 T/F」**를 구성, 정책과제 점검 및 보완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13.10.2),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13.12.18),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14.4.15),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14.12.18) 등

** 고용부 차관 주재, 기재부 · 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 각 부처 ·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직장체험, 인턴 등 ‘일 경험’ 관련 사업 정비 · 개선방안*, 인문계 대졸자 · 재학생 취업촉진방안은 상반기 마련

* 직무경험 내실화 및 기회 확대, 취업연계형 프로그램의 참여 보장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붙임

’15년 지방고용노동청별 채용박람회 개최 계획(안)

청	센터	내용	시기(월)	비고
계 18회(강소기업 12회 포함)				
서울청	서울	2015대한민국취업박람회	10	한국관광업호텔협회
	강남	우수중소기업채용박람회	6	
	관악	2015 G-Valley 채용박람회	9	(사)벤처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청	인천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4.29	인천시, 인천중기청
	성남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6	성남상공회의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안산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10	안산시, 안산상공회의소
부산청	동부	동부산권 채용박람회	6.10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9	부산상공회의소
	북부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4.23	
	울산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10	울산교육청
대구청	대구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5	대구시
	서부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4	달서구, 서구
	영주	일자리 만남의 날	9	영주시
광주청	광주	광주전남 채용박람회	9	광주시
	전주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4월 말	전주시
대전청	대전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4.29	
	청주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10	
	천안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	9	

2014년 국민연금, 375만명에게 13조 8천억원 지급

* 본 자료는 2015년 3월 17일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에서 발표한 「2014년 국민연금, 375만명에게 13조 8천억원 지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014년 한 해 375만명의 수급자에게 13조 7,799억원의 연금(매월 1조 1,483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총급여의 82%인 11조 3천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되었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0.6%, 2.4%, 일시금이 5.0%를 차지하였다.
 - 연금수급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6%로 전년보다 76천명이 늘어났다. 특히, 유족연금수급자 중 여성은 92.5%, 분할연금수급자 중 여성은 88.2%로 남성에 비해 12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여성의 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성별 연금수급자

(기준: 2014.12월 당월, 단위: 명)

구분	계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계	3,533,631	2,907,498	11,802	70,433	555,700
여성	1,435,069	910,142	10,406	10,863	514,064
남성	2,098,562	1,997,356	1,396	59,570	41,636

- 전국 17개 시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서울(69만명)이 2조 8,339억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경기도(72만명)가 2조 8,15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1인당 지급액은 울산지역(연 4,832천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652만명)의 34.8%인 227만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1.2배로 증가한 반면 수급자 수는 1.8배(2009년 1,265천명 → 2014년 2,268천명)로 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전라북도 순창군이 46.1%로(9,160명 중 4,223명 연금 수급) 제일 높았고, 경상북도 청도군이 45.8%로 그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단위: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65세 이상 인구	5,267,708	5,506,352	5,700,972
수급자 수	1,264,623	1,423,685	1,600,966
비율	24.0	25.9	28.1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65세 이상 인구	5,980,060	6,250,986	6,520,607
수급자 수	1,830,197	2,061,289	2,267,567
비율	30.6	33.0	34.8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 상위지역

(기준: 2014.12월말, 단위: 명, %)

순번	지역	65세 이상 수급자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전라북도 순창군	4,223	9,160	46.1
2	경상북도 청도군	6,232	13,615	45.8
3	전라남도 화순군	6,904	15,187	45.5
4	전라남도 장성군	5,437	12,263	44.3
5	울산광역시 동구	5,500	12,496	44.0

-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지역별로 국민연금 수급자 동호회 및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적극적인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2014년 연금수급자 모임 참여자 : 4,682명
(주요활동) 미용, 동화구연단 공연 등 재능기부, 배식봉사 및 반찬배달, 장애인 활동지원, 탈북 청소년 역사교육 등

연금수급자 모임 참여 사례

- ※ (사례 1)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남, 69세) 씨는 국민연금에 18년 동안 가입 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월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금수급자 모임을 6년째 참여하여 활발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음
- ※ (사례 2)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장○○(여, 65세)씨는 2009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며, 연금수급자 봉사단 참여를 통해 장애인 돌봄 등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보람된 은퇴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도 현재 214,456쌍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4.3%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그중 최고로 연금을 많이 받는 부부 수급자는 합산하여 월 251만원을 수령 중이며,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인 월 136만원을 초과

하는 부부수급자는 3,428쌍이다.

* 50대 이상 중고령자 5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부부합산 최저생활비 월 136만원으로 응답(2013년 국민연금연구원 실시)

부부 연금수급자 증가 현황

(기준: 12월 당월, 단위: 쌍)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부수급자	108,674	146,333	177,857	194,747	214,456

여성 가입자 및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현황

(기준: 12월 당월,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여성 가입자	7,659,407	8,116,412	8,504,904	8,797,089	9,078,893
여성 노령연금수급자	711,847	759,602	833,700	869,409	910,142

주: 가입자는 사업장, 지역(납부예외 포함),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 이처럼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각자의 연금을 받아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전업주부 등 여성의 임의가입 비율이 84%로 높다*.

* 2014.12월 말 임의가입자 202,536명 중 여성가입자는 170,236명으로 84%임

-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은 87만원이며, 수급자 중 최고액은 월 173만 1,510원이다.
-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월액이 높는데, 20년 이상 가입한 연금수급자가 2008년 최초 1만 3천명에서 2014년 말 14만 4천명으로 7년 만에 11배로 늘어났으며 현재 월평균 87만원의 연금을 수령 중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급자수	12,798	33,005	57,460	82,436	121,826	125,630	143,596

- 현재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A(65)씨이다.
 -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8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21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09년 11월부터 매월 13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다.
 - 하지만 A씨는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하였고, 연기가 기간이 끝난 지난 2014년 11월부터 32.8%인상된 월 173만 1,510원(연 2천만원)을 수령 중이다.
- 또한 2014년 12월말 현재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33명이며, 그중 최고령자는 전남 나주시에 사는 B씨로 104세이다.

연금종별 평균·최고연금 월액

(기준: 2014년 12월 당월, 단위: 원)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년이상	10~19년	1급	2급	3급	
최고	1,731,510	1,731,510	1,661,130	1,344,760	1,099,970	887,300	864,250
평균	323,280	869,800	408,260	581,390	460,140	355,610	253,570

주: 일시금형태로 지급되는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제외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65세(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까지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연기가 동안 월 0.6%(연7.2%)의 연금을 가산하여 수령

* 연기연금 도입 시(2007.7.23.) 연 6.0% 가산 → 2012.7.1. 이후 연 7.2% 가산

- 2015년 올해의 경우, 총 415만명 수급자에게 월 1조 3,823억원씩 총 16조 5,875억원의 국민연금이 지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수급자와 연금지급액이 모두 각각 40만명, 2조 8,076억원이 늘어나며, 향후 2025년에는 수급자가 629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안정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가능한 빨리 가입하여, 많이, 오래 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 반납* · 추납** 및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연금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반납제도: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 ** 추납제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 아울러, 현명한 노후대비를 위해 부부가 같이 가입하고 각각 연금을 받는 1인 1연금 설계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맞춤형 노후설계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14년도 국민연금 연도별, 지역별 지급현황

■ 연도별 국민연금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	연금				일시금				
		소계	노령	장애	유족	소계	장애	반환	사망	
2014	수급자	3,748,130	3,586,805	2,947,422	75,387	563,996	161,325	2,651	146,353	12,321
	금액	13,779,943	13,087,468	11,295,917	331,604	1,459,947	692,475	34,471	618,469	39,535
2013	수급자	3,633,770	3,440,693	2,840,660	75,041	524,992	193,077	2,993	179,440	10,644
	금액	13,112,752	12,361,973	10,705,594	326,168	1,330,211	750,779	38,737	679,145	32,897
2012	수급자	3,499,522	3,310,211	2,748,455	75,934	485,822	189,311	2,862	175,716	10,733
	금액	11,550,754	10,837,244	9,327,087	314,463	1,195,694	713,510	34,654	648,045	30,811
2011	수급자	3,166,983	3,015,244	2,489,614	75,895	449,735	151,739	3,480	136,628	11,631
	금액	9,819,296	9,273,039	7,905,180	305,547	1,062,312	546,257	41,919	475,051	29,287
2010	수급자	2,975,336	2,820,649	2,330,128	76,280	414,241	154,687	3,447	141,347	9,893
	금액	8,635,877	8,107,420	6,861,876	296,305	949,239	528,457	37,299	465,532	25,625
2009	수급자	2,770,344	2,602,630	2,149,168	74,535	378,927	167,714	3,836	154,119	9,759
	금액	7,471,934	6,946,490	5,814,825	287,016	844,649	525,444	40,940	460,476	24,028

■ 2014년 지역별 노령연금 지급현황

(기준: 2014년 지출 급여비*, 단위: 명, 천원)

지역	수급자수	국민연금 급여비총액	1인당 지급액
서울	687,611	2,833,879,274	4,121
부산	304,173	1,168,614,529	3,842
대구	184,851	657,105,790	3,555
인천	176,848	685,123,663	3,874
광주	91,754	320,313,619	3,491
대전	89,275	341,764,187	3,828
울산	73,391	354,589,367	4,832
세종	10,623	36,268,074	3,414
경기	718,794	2,815,539,814	3,917
강원	128,499	432,116,215	3,363
충북	123,856	419,828,098	3,390
충남	171,110	536,530,554	3,136
전북	176,147	528,284,512	2,999
전남	211,940	609,082,952	2,874
경북	280,172	925,234,535	3,302
경남	271,657	957,881,614	3,526
제주	47,429	157,785,725	3,327
총계	3,748,130	13,779,942,522	3,676

■ 2014년 지역별 국민연금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원)

지역	수급자수	지급액	평균 연금월액	최고연금월액
서울	555,070	2,357,095	371,120	1,731,510
부산	242,942	979,063	351,620	1,553,580
대구	146,679	543,218	322,650	1,466,860
인천	135,909	548,860	353,670	1,506,960
광주	72,248	262,515	317,170	1,417,350
대전	70,829	283,428	349,190	1,561,870
울산	56,652	297,255	460,610	1,502,230
세종	8,427	30,071	311,720	1,407,260
경기	557,458	2,271,935	356,400	1,710,860
강원	99,428	350,793	306,850	1,420,440
충북	95,888	340,794	309,720	1,418,940
충남	132,863	431,679	282,480	1,484,710
전북	140,087	434,582	269,970	1,466,640
전남	165,719	494,733	258,740	1,516,080
경북	220,402	763,995	301,450	1,632,230
경남	209,462	777,750	323,450	1,608,540
제주	37,359	128,151	297,580	1,448,970
총계	2,947,422	11,295,917	334,410	1,731,510

* 연금급여비: 노령·장애(일시금)·유족연금 및 반환·사망일시금 급여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실시

* 본 자료는 2015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에서 발표한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실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최경환 부총리는 3.13(금), 대한상의에서 고용부·공정위·금융위·산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과 함께,
 - * 산업부는 1차관, 금융위는 부위원장 대참
 - 경제5단체장을 만나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였음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오찬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5.3.13(금) 12:00~13:30, 대한상의 중회의실A(지하2층)
- 참석자 : 경제부처 장관 및 경제5단체장
 -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 (경제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5단체장과의 상견례를 겸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유임* 또는 새로 취임**한 5단체장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 유임 : 대한상의 회장, 전경련 회장

** 신규취임 : 증기중앙회 회장, 무역협회 회장, 경영자총협회 회장

-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가 새롭게 활력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

-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로 회복모멘텀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 재정확대·금리인하 등 거시경제정책의 확장운영, 과감한 규제개선,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마련, 민간 SOC투자 촉진 등 경제활성화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계가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
-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과 30조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투자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
- 또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과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도 양보하고 고통 분담해 줄 것을 당부

별첨 1 부총리 모두발언 참고

- 경제5단체장들은 경제부처와 경제계 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마련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속 단체를 대표하여 활발히 의견을 제시함
-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현재의 경기불황은 오랜 불황의 막바지 단계로 곧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 경제주체 간의 팀플레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성공비결로 경제계에서도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쟁력 강화에 힘을 쓸 것을 약속
-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올해도 국내외 경영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체질 개선노력과 규제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발언
-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며, 기업현장과의 소통노력을 당부함
- 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은 “글로벌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나가는 노력이 모두에게 필요한 때”라고 언급
- 경총 박병원 회장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구조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요청
- 간담회 참석자들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올해 경제정책방안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경

쟁력을 강화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을 약속함

별첨 2 부총리 모두발언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제5단체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경제5단체 회장님들의 임기가 지난달에 모두 새롭게 시작되었기에
 -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 우선, 대한상의와 전경련의 두 분 회장님께 유임을 축하드리며
 -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님,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님,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님께는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함
- 【최근 경제상황】**
 -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 노력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는 등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
 -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

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

- 대외적으로도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에 의해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추격,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음

【경제정책방향】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음
 - 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2% → 1.75%)한 것도 경제의 활력 회복과 저물가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이와 함께, 3~4월에는 노동·공공 등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내도록 하겠음
 -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하겠음

- 또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핵심 규제들을 규제 기요틴 방식으로 과감하게 개선*해나가고,
 - * 총 153건의 건의사항 중 114건 수용
 - 과잉투자 분야, 신산업 분야 등에 있어서 기업의 자발적인 M&A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정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

【정부-경제계 간 파트너십】

-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정부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 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청

년고용,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투자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림

- 무엇보다도 청년 취업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람
 -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관한 문제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함

- 둘째,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서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람
 -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람

- 셋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기투자자 자본회임기간이 길거나 신산업 진출로 투자리스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 현재 1.2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음

- 넷째,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민간과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므로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경제계에서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림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 본 자료는 2015년 3월 9일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에서 발표한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 앞당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14년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운영 성과
 - (탈세제보) 19,442건 접수('13년 대비 3.6% 증가) 1조 5,301억원 추징('13년 대비 15.8% 증가)
 - (차명계좌 신고) 12,105건 확보('13년 대비 37.6% 증가) 2,430억원 추징('13년 대비 109.7% 증가)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내용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15.1.1.시행)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15.2.3.시행)
- 앞으로도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에 세정역량 집중
 - 편리한 제보환경 조성,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및 홍보 등 국민 참여를 통한 탈세감시 활성화 지속 추진

1 2014년 제도 추진 개요

- 지난해 국세청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로
 -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에 노력하였음
- 또한 '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음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과세기반 구축 경과

- ('14.1.1.)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10억원 → 20억원)
- ('14.6.1.)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위촉
- ('15.1.1.)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20억원 → 30억원)
- ('15.2.3.)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계좌건당 50만원 → 100만원)

2 2014년 제도 운영 성과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로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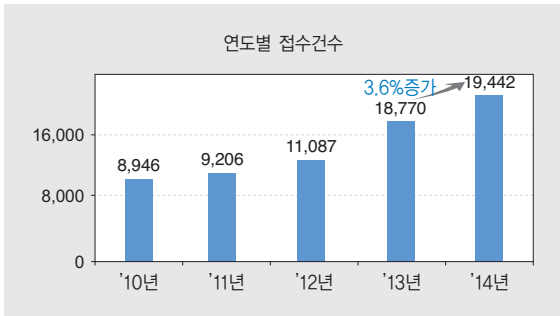
포상금 제도 개편내용

구분	종전	개선	시행시기
지급률 인상	2~5%	5~15%	'13.7.1.
지급기준 완화	탈루세액 1억원 이상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	
한도액 인상	10억원	20억원	'14.1.1.
	20억원	30억원	'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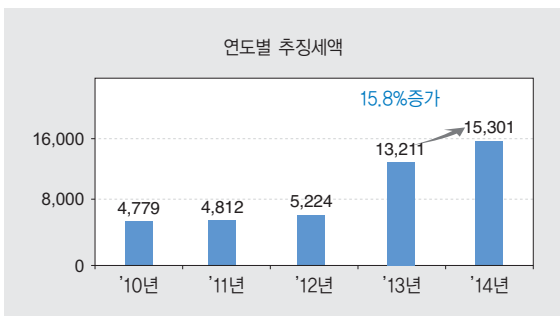
- 제보에 대한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13년 대비 15.8% 증가한 1조 5,301억원 추징함

탈세제보 운영 성과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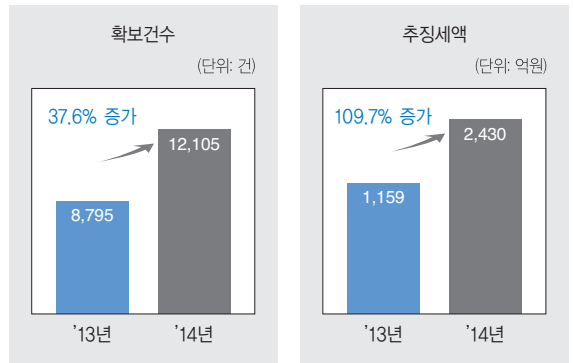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차명계좌 신고) 신고 포상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12,105건을 확보하였고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선제적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여 '13년 대비 109.7% 증가한 2,430억원을 추징하였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성과



- **(국민 탈세감시단) '14.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하였음
 -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 탈세제보와 국제행정 발전방안 등 489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3.0」을 구현함

3 향후 추진 방향

- 올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20억원 → 30억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건당 50만원 → 100만원)에 따라,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가 과세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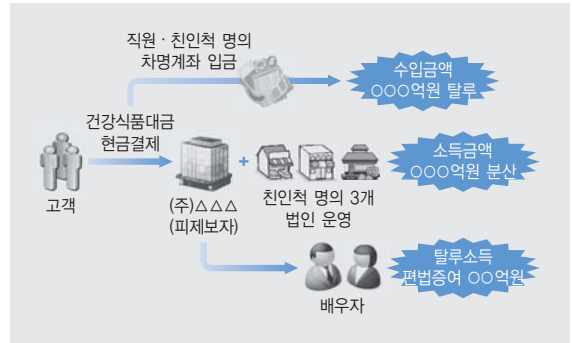
-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음

- 아울러,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여
 -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붙임 1 조사사례

【사례 1】 건강기능식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임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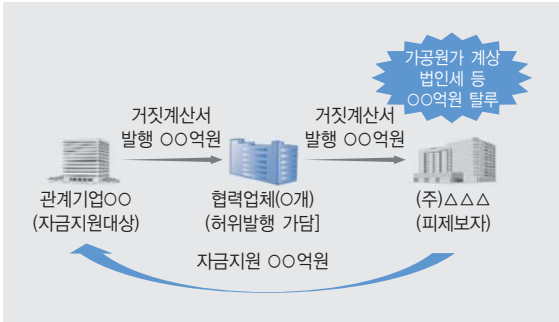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업 종 : 도매/건강식품
- 탈세제보 신고내용
 -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은 임직원 명의로 입금받는 등 수입금액 탈루
- 조사내용
 - (주)△△△의 실질사주 ○○○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후 판매 대금을 지로영수증으로 위장한 친인척·임직원 명의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외제차·펜션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지원 등 호화생활 영위



- 조치사항
 -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증여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신고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원 지급

【사례 2】 관계기업 지원 목적으로 협력사와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업 종 : 제조/기계장비
- 탈세제보 신고내용
 -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주서 등 서류 조작 후 관계사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 등 탈루
- 조사내용
 - (주)△△△는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개의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 편법 지원
 - ○○기업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분식회계로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등을 회피함



■ 조치사항

- 피신고자 등에게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신고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00백만원 지급

【사례 3】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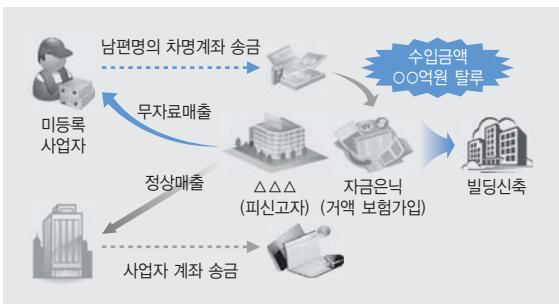
■ 인적사항

- 상 호 : △△△
- 업 종 : 도소매/건축자재

■ 차명계좌 신고내용

- △△△ 대표 000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요구

■ 조사내용



- 건축자재를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또한, 탈루소득은 고액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은닉하였으며,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000억원 상당의 빌딩 신축

■ 조치사항

-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한-UAE 관세청, 세관협정 체결로 對UAE 수출기업지원 강화

-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UAE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

* 본 자료는 2015년 3월 6일 관세청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제협력팀에서 발표한 「한-UAE 관세청, 세관협정 체결로 對UAE 수출기업지원 강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관세청은 3. 5.(목, 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

* 세관상호지원협정: 관세행정의 전문적, 기술적 사안(부정무역 단속공조, 기술적 지원, 정보교환 등)에 대한 양국 관세당국 간의 합의사항을 다룬 협정

■ 양국 관세청은 '09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세관협정 체결추진에 합의한 후, 5년간의 문안협의 끝에 비로소 협정 체결의 결실을 이루었다.

■ UAE는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대 교역국으로, 1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동 비즈니스의 메카이다.

■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對UAE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이 한층 강화되어

•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은 물론,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의 對UAE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 특히,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UAE 내에 각종 건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측면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 또한, 이번에 체결한 세관협정은 양국 세관 간 정보교환*을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 관세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보, 과세가격·품목분류·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보 등

• 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정보교환으로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양국 관세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앞서 제1차 한-UAE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 '15.3.5.(현지시간), 아부다비(UAE 연방관세청)

• 세관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상호 행정적·기술적 지원, 전문가 교류에 대한 성실이행 방안과,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의 증대를 위한 관세행정 측면의 협력관계 증진 등 양 관세청 간의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IT·보건의료·금융·무역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UAE 전략 2021'과 관련하여, 무역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세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나가는 한편,
 -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1 한-UAE 교역 현황

■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년도	수출		수입		교역규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	75,231	5,487	4,685	12,170	17,657
'11	78,830	7,267	5,067	14,759	22,026
'12	74,236	6,861	5,578	15,115	21,976
'13	80,489	5,737	6,168	18,122	23,859
'14	86,612	7,211	6,765	16,194	23,405

■ 對 사우디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13년 기준)

구 분	수출품목	수입품목
1	전기제품	석유·석탄
2	기계·컴퓨터	알루미늄
3	자동차	철강제품
4	철강제품	동(구리)
5	철강	전기제품
6	담배	연(납)
7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8	고무제품	광학기기
9	플라스틱	기계·컴퓨터
10	필라멘트섬유	유리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지원 사업 본격 실시

– 영세기업 및 FTA 미활용 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FTA활용률 제고 –

* 본 자료는 2015년 3월 2일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지원 사업 본격 실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5년도 YES FTA* 정부 예산지원 컨설팅’을 금년도 3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 ‘YES FTA’는 관세청의 FTA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솔루션(‘15. 2. 6. 상표권등록)

•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최초 컨설팅을 개시한 이래 총 2,287개 업체를 지원했다.

* (‘11년) 734개 → (‘12년) 477개 → (‘13년) 502개 → (‘14년) 574개

• 그간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결과,

– 전년도에는 574개 참여기업 중 570개 업체(99%)가 컨설팅 이후 즉시 FTA를 활용하고, 그 중 180개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는 등 컨설팅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세관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금년에도 지난해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 아직까지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수출기업 및 영세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에 대비하여 對中 수출기업도 상시

발굴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중소기업이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및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동 컨설팅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본부세관 등 6개 권역별 세관에서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 대상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며,

• 신청은 아래 해당되는 관할 지역 세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1월 이내에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고, 관세청 및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인력·자금·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고 간단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FTA 기업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 박차

* 본 자료는 2015년 3월 1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에서 발표한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 박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2월 27일(금)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함
 -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14~'18년의 기간 중 27조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한 데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확대해 가기로 함
 - **(보조금 개혁)** 2,000여 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 심사, 일몰제 도입 등 보조금 평가 강화
 - 고의 부정수급 시 영구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공표 등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 12.)'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 현행 3년마다 하는 보조사업 평가를 보조사업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위주로 변경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달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3년간('15~'17년) 유사·중복 사

업 600개를 통폐합

- '15년 예산편성 시 370개 사업의 통폐합을 완료하였고,
 - '16년 예산편성 시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여, 당초 목표('17년 예산편성 시 통폐합 완료)를 조기 달성할 계획
- 향후 각 부처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통폐합 유도를 위해,
 -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 추진방식도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 발굴, 정비안 마련 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
- **(국유지의 창의적 개발·활용)** 국민 편익 증진,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정책 전반을 정비
 - (위탁 개발) 노후 공공시설 재배치 및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시설 안전 등 문제해결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
 - *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중부 세무서 등 1,860억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추진
 - (재산관리 효율화)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관서·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청사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
 - *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시스템을 구축, 각 기관 재산관리 담당자가 청사수급상황 정보를 수시로 탐색하는 기능

구현('15. 1월 말부터 시행중)

- **(경상비 절감)** 정부·공공기관의 기본경비, 운영비 등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술선수범하여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집행점검단을 통해 점검
- **(공공기관 예산절감)** 재정개혁에 부응하여 공공기관도 사업관리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 추진
 - 민간자본 활용 등 사업방식 다각화, 사업단계별 원가절감 방안 발굴 및 부채원금의 조속한 상환 등으로 비용 절감
 - * (철도) 단순 정비 위탁 확대, (NH) 임대리츠, (수공) 단지사업 민간 대행개발, (동서발전) 발전설비 정비자재 국산화, (한전) 통합발주 확대 등 조달비용 절감
 - 신규 대규모 투자 결정 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등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
- **(재정제도 개선)**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4월 확정·추진
 - *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 ICT R&D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공탁출연금의 기금화 추진 등
- 특히, 올해부터는 재정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
 - 우수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 부여
 -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포상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에서도 재정개혁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하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별첨 재정개혁 주요 사례

재정개혁 추진 중인 주요 사례

1. 재정구조 정상화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보조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
 -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집행되어 재정누수, 부적정 수급을 유발
 - * 사업 타당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보조사업이 선정되고, 일단 보조사업이 선정되면 축소·폐지 곤란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금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집행점검을 상시화·체계화하고 정산 등 사후관리를 강화
 - 대형사업별(100억원 이상) 집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매 2년) 실시
 - * 보조시설 매매·담보제공 등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 부기 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승인없는 무단거래에 대한 처벌을 신설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신규)
 - 현행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 변경 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되어 잦은 총사업비 변경 및 증액 요인으로 작용
 - 업무추진 방법 및 소요 변경 등을 이유로 잦은 총사업비 변경 시 방산비리·부실 위험 상존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국방 무기 도입체계 관리 강화 추진

* 예) 총사업비의 20% 미만으로 증액을 요구한 경우에도 필요 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 대안 분석 등 추진

■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의 정부재정 편입

- 빈곤퇴치기여금을 집행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에 반영 추진(신규)

* 빈곤퇴치기여금(국제선 출발 항공권 1,000원 부과)은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에 적용을 받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 반영할 필요

(단위: 억원)

자금명	'11년 실적		'12년 실적		'13년 실적		'14년 예상		'14년 잔액(결산) 예상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빈곤퇴치기여금	176.6	129.0	199.2	132.7	208.1	102.9	238	146	254

- 세입·세출 외로 운영 중인 공탁출연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여 공탁출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신규)

2. 업무방식 효율화

■ ICT R&D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신규)

- 현재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으로는 연구비 사용내역의 상시 점검이 곤란하여 부정사용·횡령 가능성 상존
- 연구비 관리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사용건별 증빙 확인 후 거래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부도 등 사고발생시 자동 집행정지, 국제청 등과 연계한 온라인 증빙관리 및 자동검증, 온라인 정산체계 등
-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효과와 더불어, 연구비의 국고은행 예치기간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기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출효율화(신규)

-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 이력관리 미흡 등으로 효과성이 낮다는 지적

* 연도별 지원규모 추이(조원) : ('12) 10.1 → ('13) 10.9 → ('14) 11.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사업별 지원이력 및 수혜기업 정보 등을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전면적인 지출효율화 추진

*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와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15년 구축완료)

-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 특정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 지원한도제 도입·시행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상담·신청 기능 구현, 기업여건에 맞는 사업 추천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및 타당성 점검 강화

- 경쟁적 투자와 연구자 소유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함

- 연구자는 연구비(장비구입비 포함) 확보에만 관심, 중복성 검증 또는 활용계획 미흡, 과사용·연구비 소진용 구축

* 연구자별 독점적 사용, 과제종료 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방치 사례 발생

- 구축재원* 또는 연구기관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 추적점검 결과를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반영

- R&D 예산 배분·조정단계에서 사업 기획,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함

- 고가장비부터 단계적으로 연구비에서 장비 구입비 분리, 별도 연구시설·장비 구축·활용과제로 재편
- 연구장비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여 신규예산 최대한 절감
- 장비 활용도 전수조사 및 과제종료 후 활용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장비를 회수하고 수요기관에 이전 재배치

-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관리 등 추진

3. 지원체계 개선

■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신규)

-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부 민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총액이 연간 6천억원 수준으로 재정부담 가중

* '09. 10월부터 신규 민자사업의 MRG 전면 폐지

-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MRG 완화 추진

* MRG사업을 운영비용 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지급액 절감

** 재원조달구조 변경(고금리 → 저금리)으로 생기는 이익 일부를 MRG축소에 사용

- 우선적으로 연간 3천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 재구조화 추진

■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부동산 통합정보*를 활용하여 국유재산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함

* 공간정보(항공영상, 연속지적도, 건물위치 및 형상정보)와 토지·건물의 용도, 가격, 소유 등 문자정보를 융합한 정보로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

- 건축물 등에 무단 점용·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등 결정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동반성장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 포럼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12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제19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본부장은 "지방분권이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으로만 이해되지 않고, 수도권 지방의 재정 책임성 강화로 이해될 때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의 본질은 지방정부가 재정권한과 재정책임을 동시에 지는 것으로, 수도권이 지금까지 재정잉여(fiscal surplus)를 향유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질 경우, 국가적으로 확보 되는 재정여력이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되어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의미를 정립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오해와 혼동으로 수도권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간 충돌,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계해서 도입된 지방소비세 논란 등이 그 사례다.

또 김정훈 본부장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평균 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수도권 생산량 비중보다 더 '높은'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만큼 중요한 숙제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라면서 "지금까지처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에 세원 이양을 하는 것은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 모두를 잃는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럴드경제, 2015-03-12)

디플레 우려에 "가용 수단 총동원"... 상반기 정책 자금 10조 쏟아

재정고갈 따라 민자 끌어들이 '한국판 뉴딜' 추진

정부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태세다. 민자사업 활성화로 수요를 자극하고 지난해 내놓은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도 가급적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재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인상까지 들먹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앞으로는 민간투자 사업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

나라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최 경제부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거시경제 패키지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책정된 376조원의 중앙정부 예산도 58%를 상반기에 집중한다. 특히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 안정 관련 예산은 상반기에 만 60%가 쓰일 예정이다.

실제로 올 1월 재정집행률은 8.3%로 목표치보다 0.6%포인트 높다. 이런 속도로 재정집행이 이뤄지면 올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목표치인 58%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정집행률 목표치는 57.1%였지만 실제 집행률은 58.1%였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58% 조기 집행하면 상반기에 균등하게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0.2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 관계자도 "41조원 정책 패키지 중 잔여분은 보증 등 정책금융 중심"이라며 "예산이 중심이 되는 재정 집행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배정된 잔여분을 상반기에 대부분 사용하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론에 불을 지핀 데 이어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예고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현행법 체계상 민자사업은 민간이 리스크를 떠안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과 정부가 발주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BTO 방식은 민간의 활력이 침체되면서, BTL 방식은 재정악화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2015-03-09)

“월드컵·올림픽 개최 경제성장 도움 안돼”

조세연구 “지자체 장밋빛 전망 부풀려...개최 자체보다 좋은 성적이 효과적”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가 경제성장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5일 발간한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참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 여부나 참가 성적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14년 월드컵에 한 번 이상 참가한 26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전년도 성장률과 세계 경제성장률, 환율 등의 ‘경제 변수’이지 월드컵은 아니었다. 다만 월드컵 성적은 GDP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인 소비와 수출, 수입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8강에 진출하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또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 수출에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4강에 진출하면 이 효과가 더욱 커졌다. 수입은 8강에 진출했을 때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는 소비 진작을 위해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보다 8강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월드컵을 열어 놓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남들에게 파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때는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는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단계에서 수익이 훨씬 크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개최 이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 전망치와 꽤 다르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공적자금 2조 2056억원이 투자됐다. 인천시가 발행한 지방채(빛)만 1조 2500

억원 수준이다.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12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9년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서울신문, 2015-03-06〉

재정포럼

2015년 3월호 통권 제22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윤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김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턴)

■ 월간 재정포럼

2015년 3월 16일 발행 / 제19권 제3호(통권 제22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1~5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
-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인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